
碩 士 學 位 論 文

信用卡去來上の 責任問題

—카드會員保護를 中心으로—

A Responsibility Problem on Credit Card Transaction

—With the Focus on Protecting the Membership—



金 錦 淑

1998年 6月

信用卡去來上の 責任問題

—카드會員保護를 中心으로—

A Responsibility Problem on Credit Card Transaction

—With the Focus on Protecting the Membership—

指導教授 韓 三 寅

金 錦 淑

위 論文을 法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년 6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錦淑의 法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8年 6月

**A Responsibility Problem
on Credit Card Transaction**
—With the Focus on Protecting the Membership—

Keum-Sook Kim
(Supervised by professor Sam-In H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AW**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8. 6.

目 次

ABSTRACT	i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1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4
第 2 章 信用卡드 制度의 概觀	6
第 1 節 信用卡드 制度	6
I. 信用卡드의 意義	6
II. 信用卡드의 發達過程	19
III. 信用卡드의 機能과 種類	35
第 2 節 信用卡드 去來構造 概觀	39
I. 去來構造 5段階	39
II. 根據法規	40
III. 信用卡드 去來의 法律關係	43
第 3 節 信用卡드 去來의 學說	47
I. 主要國家의 學說	47
II. 私見	58

第 3 章 信用卡去來上の 責任分擔에 관한 法律問題 ..	60
第 1 節 不正使用의 損失負擔에 관한 法理論	60
I. 序說	60
II. 不正使用의 類型과 責任關係	61
III. 不正使用의 現況	68
IV. 不正使用에 따른 損失負擔의 原則	73
第 2 節 카드 盜難·紛失時 不正使用責任의 問題	77
I. 會員의 損失負擔	78
II. 加盟店의 損失負擔	86
III. 信用卡業者의 損失負擔	90
IV. 外國의 立法	91
第 3 節 連帶保證人의 責任과 그 制限의 問題	95
I. 從前의 約款廢止	95
II. 保證人 制度의 法律關係	96
III. 會員規約上의 連帶保證人의 責任 및 그 制限	98
第 4 節 賣買契約에 따른 카드 會員의 抗辯權의 問題	101
I. 抗辯權의 法律關係	101
II. 分割給의 경우	103
III. 一時給의 경우	106
IV. 關聯問題	107
V. 外國의 立法	110
第 4 章 信用卡 會員의 保護方案	113
第 1 節 現行 制度의 導入背景	113

I. 制度改善의 必要性	113
II. 與信專門金融業法の 制定	115
第 2 節 問題點의 概觀	119
I. 通貨管理 問題	119
II. 法人카드에 대한 割賦購買 許容 問題	119
第 3 節 會員의 保護方案	120
I. 金融紛爭調停制度	121
II. 個人信用評價制度	121
III. 保險制度	124
IV. 技術導入	125
第 5 章 結論	130
參考文獻	133

<표> 목 록

< 표Ⅱ-1 >	미국의 신용카드 발달과정	21
< 표Ⅱ-2 >	은행계 신용카드사 발달과정	25
< 표Ⅱ-3 >	전문사업계 신용카드사 발달과정	26
< 표Ⅱ-4 >	신용카드 발급수	28
< 표Ⅱ-5 >	회사별 가맹점수	30
< 표Ⅱ-6 >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31
< 표Ⅱ-7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규모현황	33
< 표Ⅲ-1 >	신용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	69
< 표Ⅳ-1 >	신용카드사의 업무현황	118
< 표Ⅳ-2 >	신용정보법이 제공토록 허용한 공공정보	123



ABSTRACT

A Responsibility Problem on Credit Card Transaction

— With the Focus on Protecting the Membership —

Keum-Sook Kim
Department of Law
Cheju National University

It has only been twenty years since “credit card” , also called plastic money, came into use in our society. Credit cards were accepted after the two primary forms of currency, cash and check, respectively. The main reason for this rapid expansion of credit card use for a very short period is due to the fact that products and services can be purchased without immediate redemption. Moreover, even though that after a product or service has been purchased, the payment can be postponed for a stipulated amount of time. Also, the credit-guaranteed way allowed payment not only in a single lump sum, but also through installments. By using installments, a long-term payment schedule allows the cost of an expensive durable item to be drawn out over the life of the item. Defraying the large amount of money for durable

goods will be relieved by installment payments. Once certain conditions are set, credit card can be a very convenient medium to receive a loan or cash.

Currently, credit cards are commonly accepted as a medium of payment around the world. Credit cards themselves can change the business transaction structure because of the role it plays in business transaction. Also, the initiation of debit cards and IC cards is showing a rapid development along with the credit card business.

During the initiation of credit cards in the early 1980's, there were no more than 100 million members whereas today, as of March 1998, membership has risen to 4.3billi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Korean government created a pro-credit campaign, including the slogan "Construction of Credit Society" . This lead to the policy to promote the use of credit card and to encourage credit card industry.

But with all the rapid developments, there is a setback. Many problems followed the 1980's common use of credit cards. These problems include ①Delay or Default, ②Delinquency, and ③Crime. During the early 1990's there was large-scale adjustments to credit card business to settle the credit card society.

Since then, the Finance Ministry has brought in a legislative bill of the Consumer Credit to try to legalize it law not only for finance installments and selling on an installment basis, but for general consumer credit. But many various strata of society criticized this as being premature. The Finance Ministry has reserved implementation of this bill, segregated only Act 4 on Credit Cards from this bill, and

established a “Credit Card Act” on May 30, 1987. However, this act did not clearly distinguish it from a principle of law and a judicial precedent(case law) during this period, and this law was just copied from other developed country’s law. Therefore, on December 31, 1990, the government created the first amendment of the “Credit Card Act” for solidification of credit card transactions. There was also an amendment on “Provision of Bank Credit” that was passed in October, 1992, and “Provision of Department” in January, 1993. However, after a change of regime in May 1993, Credit Regulation was lifted through a deregulation policy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the “Credit Card Act” became the second amendment on January 5, 1994. Several major changes followed this act. They were making ① permission of prepayment card and direct card, ②the upward readjustment to the capital of credit card companies for sound credit card business, ③the readjustment to credit card companies to be punished when company impute the franchise fee to the consumer. Finally, “Credit Specialization Finance Act” was added on August 29, 1997 and amended on January 13, 1998.

There are four problems to the civil proceeding act concerning credit cards. First, who is go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use of stolen credit card? Second, there is an issue about responsibility of credit card guarantor. Thirdly, there is a demur problem based on basic business transactions that are always issued whether or not the member can refuse the payment because of the inferior quality of the purchased goods. Finally, there is the constant conflict of credit

information control and a privacy problem.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and credit card-related companies should clear the way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untermeasures. But until recently, the law system, provision, and customary have been bent toward the business world, not for the consumers protection, even through that has been ordered by the courts.

The focus of this paper is placed on studying the related law of credit card transactions, the case law of the illegal uses of credit cards, and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minimize the credit card accidents and damage from credit card misuse. Also, this paper analyses the scheme and countermeasure of preventive actions toward the illegal uses of credit cards in order to re-amend the “Credit Card Act” and suggest a new-model of “Credit Card Act” .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신용카드(credit card)가 현금, 수표에 이어 제3의 통화로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도 되지 않는다. 도입 초기인 80년대 초에는 회원이 100만명도 되지 않았으나, 1998년 3월 현재 회원수가 무려 4,300만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장에 상환이 없더라도 물품의 구입과 용역의 제공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금융편의 제공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먼저 현금소지에 따른 불안이나 불편이 없게 되었고, 당장에 상환이 없더라도 카드를 제시하면 물품의 구입과 용역의 제공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물품구입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라도 대금의 지불을 약정기간(최단 27일에서 최장 57일)동안 유예 받을 수 있는 신용공여 기능도 있다¹⁾. 더구나 신용공여 방식에는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할부지불방식도 있기 때문에 일시의 고액을 지불해야만 구입 가능한 구매에도 할부로 창출되는 장기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어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일정조건만 갖추면 대출금이나 현금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국적을 초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굳혀감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카드소지가 필수화되고 있고, 이러한 생활수단의 변화와 국제화의 흐름은 우리의 거래구조를 바꿔놓기에 충분하다. 또한 직불카드의 도입과 IC카드(Smart Card 또는 전자지갑)의 유통은 카드사업

1) 한삼인, 「관례민법」, 법률행정연구원, 1998, 409쪽.

의 기술적 발전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약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당연히 문제점도 속출하기 마련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연체(Delay)나 체납(Default), 카드사의 대금지급거부(Delinquency), 그리고 카드범죄(Crime)가 대두되었고 '90년에 접어들면서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산업의 수정·보완작업이 이루어져 관련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재무부에서는 1986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신용분야뿐만 아니라 할부금융, 할부판매 기타 소비자신용에 관한 종합적 법제화를 시도하였으나, 시기상조라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同法案을 일단 유보하고 그 중에서 제4장 “신용카드”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1987년 5월 30일 “신용카드업법”(법률 제3928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신용카드업을 제도화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회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신용제도를 확립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있었다. 신규제정(1987년 제정)당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첫째, 신용카드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통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그 제정 또는 변경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신규제정당시 신용카드업법 제7조 제6호),

둘째,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 기타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며(동법 제8조),

셋째,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의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후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동법 제12조 제1항).

하지만 당시에는 법리, 판례, 관행 등이 확립되지 않았고 입법 자체가 선진국을 모방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을 고쳐 1990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업법을 1차개정(법률 제4290호)하여 입법 제정시 카드의 양도금지만을 규정하였으나, 변측대출·변측대출전표 유통에 따른 제재조치(동법 제25조 제3항 제3호)를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금융의 증가에 대비하여 할부금융업무에 대한 규제근거(동법 제17조의 2)를 마련하여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고 하

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카드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동법 제14조의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에 맞춰 1992년 10월에 은행계 카드 약관이 변경되었고, 1993년 1월에는 백화점 카드 약관이 차례로 손질되었다. 그러나 1993년 5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행정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일제히 신용규제가 풀려, 1994년 1월 5일 신용카드업법 2차개정(법률 제4699호)이 이루어진다. 주요 내용은 부대업무로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입법제정당시 카드의 양도금지만을 규정하였으나 점차 확대하여 매출전표의 양도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동법 제15조의 2), 신용카드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자의 자본금을 20억원 내지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켰을 경우(동법 제25조 제3항 제2호)와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자 및 명의를 대여한 자(동법 제25조 제3항 제3호)를 처벌토록 하였다. 이렇듯 신용카드거래상의 사회적 여건변화가 거듭되는 동안, 법원의 해석은 경제적 약자인 회원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새로운 판례들을 도출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신용카드제도는 개선과 보완을 거듭했다.

법률은 급기야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5375호)을 1997년 8월 29일 제정, 1998년 1월 13일 개정하여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해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제를 마련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법이 폐지되었다(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 하지만 법률의 제정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신용카드거래상의 책임문제에 관한 민사상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난·분실 카드의 부정사용시 분실부담을 카드발행회사와 회원, 가맹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 카드보증인의 책임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셋째,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에 흠있는 불량품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카드발행회사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하는 기초 거래에 입각한 항변의 문제가 할부거래법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구조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상의

미비로 인한 대응능력의 저하를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자구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동안 논의되었던 카드사간 가맹점 공동이용체제도입, 총이용한도제의 도입,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 집중기준 강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핀패드 설치와 전자카드 도입 등 다양한 안들이 나왔고, 일부는 시행중이다. 결국 이런 노력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정으로 일부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법체계나 약관 또는 사안별로 대응해 온 관행들은 업계 위주로 치우쳐 있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상의 책임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선의의 카드 사용자의 무지에서 오는 피해를 줄여 보고자 하는 바램으로, 부정사용의 유형에 따라 최근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법해석의 의도를 알아보고,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각각의 법률과 판례를 비교·고찰하여 카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신용사회를 이루기 위한 선결과제인 카드거래 실명제의 정착과 카드부정사용의 근절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고 미비한 점을 논의함으로써, 입법의 재정비와 새로운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자료를 분석·검토·비판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중점적으로 취하였다. 아울러 법제연구의 방법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거래를 5단계(①신용신청 ②신용계약 ③신용대금의 청구 ④신용대금의 수금 ⑤신용정보에 관한 자료의 처리)로 구분 지어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학설 그리고 판례를 비교하는 이른바 비교법적 방법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신용카드거래 단계상의 신용대금의 청구와 그 수금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용카드의 의의와 발달과정을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기능과 종류를 살펴본 후, 거래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카드 도난·분실신고 전후에 따른 회원과 가맹점 및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카드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끝으로 카드회원이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카드발행회사에 대해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을 중심으로, 분할급의 경우와 일시급의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먼저 금융개방화시대에 새로 제정비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그 동안 논의되었던 입법적 개선 요구를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 舊, “신용카드업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입법적 개선방안의 흐름과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거래상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와 기술부분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신용카드 회원보호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본문의 연구한계를 밝혀,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第 2 章 信用卡 制度의 概觀

第 1 節 信用卡 制度

I. 信用卡의 意義

信用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을 뿐 통일된 정의는 없다.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는 그 역사적 기원과 발전과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정의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 신용카드의 정의는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을 논하는 것과 더불어 司法判決의 일반적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정의를 국가별로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주요국가의 법률을 비교해 보면서 신용카드의 의미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1. 主要國家의 信用卡의 意義

(1) 美國에서의 信用卡의 意義

미국에서는 연방규칙 제226조(Code of Federal Regulation § 226. 2(14))¹⁾에서 신용카드를 “신용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용되는 카드, 표찰, 증서 기타 신용수단”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州法人 “통일소비자신용법

1) Code of Federal Regulation § 226. 2(14) : A credit card is any card, plate, coupon book or other single credit device that may be used from time to time to obtain credit.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 제1편 제301조 제17호²⁾는 “신용카드란, 카드발행인이 카드회원에게 카드발행인 또는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신용을 받을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약정하에 발행한 카드나 도구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고, 통일소비자신용법과 마찬가지로 “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FCCPA)” 제1편인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 TILA) 제103조³⁾에서도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금전, 재산, 노무, 서비스를 신용으로 얻을 수 있는 카드, 표찰, 증서 기타 신용장치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州法은 크레디트 카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캘리포니아州法 1747조 2에서는 “제시에 의하여 반복하여 상품, 현금,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수단으로서 모든 종류의 카드, 표찰, 증서, 기타의 방법” 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 州法에서는 “신용카드란 신용카드, 표찰(plate) 혹은 어떤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든 간에, 카드소지인이 신용으로 현금, 상품, 서비스 혹은 어떤 다른 가치 있는 것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인에 의해 수수료가 있거나 혹은 없이 발급된 어떤 증표나 고안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F. Ch. 67-340, Sec. 817. 58).

이렇게 볼 때 美國에서의 Credit Card는 처음 카드를 발급시 회원과 일정금액수준 (“Credit Limit” 또는 “Credit Ceiling”)을 규정해 놓고 회원이 이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하였다더라도 다음달 대금 결제일에는 초과분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매월 이자만 부담하면서 계속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Credit” 를 주는 Card라는 의미이며 미국의 은행카드(VISA, Master card 등)가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 2) UCCC §1. 301(17) : Credit card means a card or device issued under an arrangement pursuant to which a card issuer gives to a cardholder the privilege of obtaining credit from the card issuer or other person in purchasing or leasing property or, services, obtaining loans, or otherwise.
 - 3) FCCPA 제1편인 貸付眞實法(Truth In Lending Act, TILA) §103 : (K)The term “credit card” means any card, plate, coupon book or other credit device existing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money, property, labor or services on credit.

(2) 英國에서의 信用卡의 意義

영국에서는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CCA)” 제14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를 “신용증표(Credit Token)” 라고 표현하면서, “신용카드란 소비자신용회사가 소비자에게 교부하거나 발행하는 카드, 예금인출카드, 수표, 쿠폰, 證印, 그 외에 증서의 제시로 신용이 제공되는 신용수단” 이라고 규정하였다.

(3) 日本에서의 信用卡의 意義

일본에서는 日本割賦販賣法 第2條 第4項에서 “신용카드는 그것을 제시하여 특정의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증표, 기타의 物” 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일본은 신용카드를 규율하는 근거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약관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법률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의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日本割賦販賣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이다.

(4) 우리나라에서의 信用卡의 意義

우리나라 與信專門金融業法(1997. 8. 29. 制定, 法律 第5375號) 제2조 제3호에서는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신용카드업법에서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고 하여 “상환하지 않는다” 는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과 상이한 부분으로, Coupon이 미연방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舊,신용카드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상환조건을 두지 않음으로 해서 신용카드의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株)가 될 수 있는 자격을 “2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200억원 이상”, “3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400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 겸영여신업자⁵⁾인 경우,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은 受信機能이 없어 예금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기자본 및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차입을 통해 與信業務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처럼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설립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도산을 막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이는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과는 달리 신용카드업의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통령령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영여신업자가 될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즉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舊, 신용카드업법 제정당시 신용카드업자의 설립자본금은 50억원, 2차 개정 때는 “자본금(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경우에는 영업기금)은 20억원(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우에는 200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5)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겸영여신업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6호, 제3조 제2항).

2. 總括的 考察

신용카드의 정의를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드거래시 실물(카드) 제시 필요성 여부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반드시 그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도 카드거래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나 일본(制賦購買法 第2條 第4項)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카드를 제시하면 자기가 권리자임을 달리 증명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거증권성을 갖고 있다⁶⁾. 그러나 신용카드사와 통신 계약이 성립된 소수의 상품으로 제한되기는 하나, 카드회원이 전화 혹은 우편엽서, PC나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혹은 전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ARS서비스에 의해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카드의 제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둘째, 카드의 이용 범위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정에는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과 같은 “판매신용”으로 이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대출등 신용을 받을 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금융”이다(UCCC §1. 301. 9항 7호). 그러나, 우리의 실거래계에서도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대출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금융” 수단으로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결국 신용카드(credit card)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⁷⁾고 할 수 있다.

6) 이은영, 「신판 민법학강의」, 박영사, 1995, 825쪽.

7) 한삼인, 「관례민법」, 법률행정연구원, 1998, 409쪽.

3. 類似概念과의 區別

신용카드와 유사한 개념은 직불카드, 선불카드, 수표카드, 할인카드, 할부판매카드, 상업신용장 등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直佛카드(Debit Card)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6호). 즉 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 금융거래시스템-EFTS⁸⁾(Electronic Funds Transfers System)에 의해 가맹점단말기-POS(The Point of Sale)에 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의 전산망을 연결, 개인예금구좌에서 가맹점구좌로 대금이 자동 이체되는 방식의 거래에 이용되는 카드를 말한다. 판매시점에서 즉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이다.

신용카드와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불카드는 백화점, 병원, 슈퍼마켓, 주유소,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빈번한 상품에 적합하고, 신용공여기간이 없고,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며(오전8시~오후10시), 또한 가맹점 수수료도 신용카드(3~5%)보다 저렴한 1~2%이고, 예금액에서 소비함으로써 충동구매를 억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용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자는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제도는 1994년도 舊,신용카드업법의 2차 개정에 따라 법률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재정경제원의 시행지연으로 말미암아 주춤거렸고, 따라서 1995년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신용카드 전문위원회를 두어 시행실시를 준비하였다. 카드회사 입장에서도 회원의 통장잔액 범위내에서 결제되므로 관리비용이나 업무가 간소화된다는 효과로

8) Mishkin, F. S.,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4th ed., Columbia Univ.,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5, pp.55~58.

기존 카드와 차별화를 두어 국내 31개 은행(농·수·축협 포함)이 1996. 1. 1.부터 가맹점가입을, 동년 2. 1.부터 회원가입을 시행하였다. 다만 세원노출로 인한 과세특례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 가맹점 가입을 꺼리고 있고 이용자입장에서 신용카드의 특징인 “외상거래”가 되지 않고 하루 사용한도액이 50만원(해외사용시 1회100불, 하루 500불)정도 밖에 되지 않아 좀 더 홍보가 필요하겠다. '96. 2분기말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대한 직불카드의 이용실적비율은 0.13%에 지나지 않는다⁹⁾.

직불카드는 현금카드(Cash Card, ATM, Access Card)가 대표적이다.

현행 은행계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현금카드의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2) 先佛카드(Pre-paid Card)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한 금액이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에 한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신용카드업법 제2조 제3호)¹⁰⁾. 이를 사용하려면 카드조회기(CAT ; Card Authorization Terminal)가 필요한 신용카드와는 달리 잔액을 확인해주는 선불카드 단말기(Reader/Writer ; R/W)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선불카드는 전화카드, 버스카드이며 앞으로도 유통업계 등에 도입되어 선불카드 시장은 확산되리라 예상된다.

선불카드의 특징을 신용카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누구라도 사용이 가능한 무기명 카드이고, 카드발행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미리 받기 때문에 판매확대 및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꾀할 수 있고, 카드회원은 카드대금을 선급하는 대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선불카드는 또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회원가입 조건을 갖춘 자만이 회원

9) 한국일보, 1993년 3월 14일자, 10면.

10) 한상문, 「신용카드법 入門」, 정법사, 1992, 9~10쪽.

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담은 ID(Identification)기능이 필요 없다.

한때 유사 상품권이라 하여 정부의 반대로 논란이 되다가, “선불카드에 대하여는 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여신전문금융업법 §13 ③)” 고 명문화함으로써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22조에서 천재지변과 같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동조 1호),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동조 2호),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이 권면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동조 3호)는 선불카드를 회수하고 잔액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 수표카드(Check Card)

수표카드는 우리나라에서 일명 가계수표 보증카드로 통칭되고 있다¹¹⁾. 이는 독립하여 사용할 수 없고 수표와 수표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

수표카드는 수표를 지급한 은행이 신용 있는 거래처에 발행하여 주는 카드이다.

최초의 수표카드는 1965년 Midland Bank에서 발행하였고, 우리나라는 1977. 4. 21. 마련된 가계당좌예금제도가 1981. 7. 1.부터 현행 가계종합예금제도로 발전하면서 등장한 가계수표보증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¹²⁾.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신용카드는 은행이 수수료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수표카드는 강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로 발행을 기피하여 현재 실무상으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다.

(4) 할인카드(Discount Card)

입회시에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입하고 할인카드를 발급 받으며, 그 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 또는 대리점에서 일정한 할인율에 의해 물품의 구입과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실거래에서 정찰제가 정착되지 않아 사실상 할인거래가 이루어지지

11) 육소영,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법률문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3. 13쪽.

12)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1992. 580쪽.

않는 경우가 빈발하여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제도이다.

할인카드는 카드 소지자에게 우대 혜택만 있을 뿐, 대금 결제는 현금 등 별개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겠다.

(5) 割賦販賣티켓(Installment Sales Ticket)

의류, 제화, 안경점 등의 판매상이 티켓발행전문회사나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티켓을 분명한 매수인의 신용을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카드발행회사가 매발행자와 약정을 맺고, 이들 회사나 조합들이 발행한 티켓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표시된 금액상당의 물품을 티켓과 교환하여 외상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은 회사 또는 조합으로부터 분할하여 지급 받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할부판매 티켓이다¹³⁾.

이는 분할불의 형식으로 구매력을 증대시켜 매출확대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티켓소지인은 물품을 구입한 뒤 보통 3개월 할부로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는 신용카드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되는 바, 할부티켓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점이 특정 점포 또는 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점, 일단 한번 사용하면 잔액처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신용공여의 주체가 티켓발행자가 아니라 판매점이 된다는 점 등에서 신용카드와 큰 차이가 있다.

(6) 商業信用狀(Letter of Credit, L/C)

상업신용장은 삼당사자 사이에 세개의 계약이 성립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신용장거래는 신용장 발행은행과 신용장 매입은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본질은 두 은행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는 신용장 거래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점에서 발행은행이 가맹점에게 회원규약과 가맹점규약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해 줄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신용

13) 한상문, 앞 주10)전게서, 10쪽.

카드와는 다르다. 또한 상업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상인에 의하여 이용되고 신용 카드는 소비자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는 점, 상업신용장은 매거래시마다 개설되 나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내에는 반복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점등도 양자가 구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7) 팩토링(Factoring)

팩토링(Factoring)이란 상사 대리인이 제조업자나 판매상의 외상채권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제조업자나 판매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고 이를 매수인으로부터 나중에 추심하는 의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관계를 말한다. 팩토링과 신용카드거래는 팩터(Factor) 또는 카드 발행회사가 매도인의 외상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매수인으로부터 추심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팩터와 카드발행회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

첫째, 팩터는 상인의 모든 채권을 매입함에 반하여, 카드발행회사가 구매, 양수하는 것은 카드 거래상의 것에 한정되어 있으며 둘째, 팩터는 상품의 매수인과는 어떠한 계약상의 당사자관계가 없음에 반하여, 카드발행회사는 가맹점뿐만 아니라, 카드회원과도 직접 계약상의 관계에 있다는 점등에서 양자는 구별되고 있다.



4. 法的 性質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1) 非有價證券性

신용카드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은 부정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첫째,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 처분을 할 때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점유를 요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¹⁴⁾의 태도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이러한 유가증권과는 달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며 신용거래를 할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자격에 불과하다¹⁵⁾. — (자격증권성)

둘째,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후에 발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대여·입질·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 (일신전속성)

셋째, 회원 자격은 반드시 카드 회사와 회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착오로 발행된 카드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등을 발행인이 회수하지 않더라도 그 카드는 효력이 없다. — (증거증권성)

(2) 證據證券性

신용카드는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카드회원과의 신용카드의 발행계약의 존재 및 카드회원의 신용상태와 신원을 확인하는 증서(an identification card)로서 증거증권성을 갖는다¹⁶⁾.

(3) 資格證券性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발행회사나 가맹점에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¹⁷⁾. 신용카드를 거래할 때 정당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 신용하는 가맹점은 물품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이와 같은 신용카드는 자격증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신용카드회원과 거래한 가맹점은 신용카드 발행회사에 대하여 매매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청구권을 갖는다¹⁸⁾.

1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 1862호 판결.

15) 이은영, 앞 주6)전게서, 825쪽.

16) 한삼인, 앞 주7)전게서, 409쪽.

17) 이은영, 앞 주6)전게서, 825쪽.

18) 최기원, 「어음·수표법」, 박영사, 1990, 867쪽.

(4) 一身專屬性

신용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질권 설정이나 대여될 수 없고 또한 회원의 자격은 회원에 대한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카드의 양도에 의해서는 물론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성을 갖는다¹⁹⁾. 가족회원 카드는 본인회원 카드와는 별도의 카드이므로 일신전속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회원 카드도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본인회원이 사망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족회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⁰⁾.

(5) 提示證券性

신용카드 회원이 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서비스 받을 때 반드시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 제시증권성이 있다.

(6) 免責證券性

신용카드 가맹점은 외견상 유효한 카드소지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회원이 아니거나 거래 당시 카드의 실질적 거래정지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책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²¹⁾. 다만 신용카드의 면책증권성은 1회사용 한도액 및 월간 사용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사용되고, 무과실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²²⁾.

19) 박병일, “신용카드에 관한 법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 1993, 21쪽.

20) 육소영, 앞 주11)진계논문, 13쪽.

21) 이은영, “신용카드(Credit Card)에 관한 법적고찰”, 「법학」(제23권 제1호), 서울대 대학원, 1982, 216쪽.

22) 정동윤, “신용카드의 무단사용시 손실부담자”, 「사법행정」, 1984. 11, 32쪽.

(7) 信用證券性

신용카드는 철저한 신용 조사와 신용도 평가에 따라 발급되며 그 카드회원에 대하여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대금의 변제가 유예된다는 점에서 신용증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증권성에 관련하여 선진국의 신용카드와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신용카드는 외상카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전액 상환하여야 하는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신용카드회원에게 개별적인 신용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내에 신용을 회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금융 등과 결합된 소비자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신용의 기능 중 판매신용으로 카드의 이용범위를 한정하여 정의하는 반면, 미국은 소비자 금융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UCCC §1, 301, 제9항 제7호).

(8) 私見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에 대해서는 각각 자격증권성, 일신전속성, 증거증권성에 의해 그 성질이 부인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로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같이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미국에서는 전화로 신용카드의 번호만을 알려주고,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제시해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통신판매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려 할 때는 신용카드의 제시와 서명을 하지 않고도 회원이 전화나 엽서 또는 FAX로 신용구매를 할 수 있다(비씨·국민·삼성·외환카드 회원규약 제5조 제1항).

따라서 약관 규정에 따라 제시증권성은 카드산업의 서비스 향상과 다양화 추세로 변화하는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회원규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에 기초하

여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에 연대보증을 세우고, 이용대금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용증권성과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 1992년 10월 1일부터 회원규약의 변경으로 개인회원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여 신용증권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회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연대보증인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증제도의 완전폐지를 이루지는 못했다.

생각건대, 연대보증인제도와 관련하여 완전한 신용증권성을 이루기 위해서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보험제도를 전반적인 규제로 하거나, 카드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손실로 해결토록 하여 신용사회 정착을 이루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II. 신용카드의 發達過程

1. 신용카드의 起源

신용카드의 기원을 중세시대의 “여행자신용장”(Traveller's Card)으로 보고 있다²³⁾. 이것은 고대의 지급수단이 물물교환(barter)에서 중세의 귀금속(금·은)으로 바뀌면서 도난위험, 운송비용, 부피과다 및 보관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위해 이탈리아의 한 은행가는 여행자신용장을 고안해 내었다.

신용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①여행자신용장(Traveller's Letter of Credit), ②순환어음(Circular Note), ③여행자수표(Traveller's Check), ④Credit Coin과 수표카드(Check Card)이고, 최초의 신용카드가 발달한 국가는 미국이다. 주요국가의 신용카드의 발달과정을 살펴본다.

23) 김문환, “크레디트카드 제도의 역사”, 『계간 신용카드』(제10호), 1996. 3, 10~11쪽.

2. 主要國家의 發達過程 概觀

신용카드는 VISA, Master Card, Diners, JCB가 대표적이다.

이들 각각의 카드는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순으로 살펴보자.

(1) 美國

미국의 신용카드 제도는 ①顧客카드(Customer Card)에서 출발하여 ②接客카드(Travel & Entertainment Card ; T&E Card)를 거쳐 ③銀行카드(Bank Card)순으로 발달하였다.

① 제일 먼저 발달한 “고객카드(Customer Card)”는 고객들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제한목적카드(limited purpose)였고²⁴⁾, 회사와 고객사이의 거래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양당사자 카드(two-party card)였다.

② 1929년 세계대공황(Deep Depression)과 2차 세계대전(1939-45년)을 겪는 동안 정부의 규제로 신용카드업계가 주춤거렸으나, 경기가 호전되면서接客(Travel and Entertainment)의 편의를 제공하는 “接客카드(T&E 카드)”가 발달하였다²⁵⁾. 이 카드는 서비스 제휴 가맹점인 상점·호텔·음식점등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카드(all purpose credit card)·삼당사자 카드(three-party card)였다²⁶⁾.

회원이 카드를 신청할 때, 카드가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넘겨져서 지금 도구로 사용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지급책임을 회원이 부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분실과 도난의 위험을 카드소지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③ “은행계 카드”의 효시는 1951년의 롱아일랜드의 프랭클린은행(Franklin National Bank of Long Island, New York)인데, 이 은행에서 매출전표(sales slip, bill of sale)를 개발하였다. 이는 美通貨局長(U. S. comptroller of the

24) Arthur G. Shapiro, “Credit Cards: Instant Purchasing Power”, 18 Intramural Law Review of New York Univ. 1963, pp.47~51.

25) 吉原省三, “クレジット・カード取引の現状と法律問題”, 「ジュリスト」(第428號), 1969, 111面.

26) 명호근,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법률문제 소고”,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대학원, 1983, 26쪽.

currency)에 의해 법적증권(legal instrument)으로 받아들여져서 외상을 함에 있어서 신용수단(credit device)에서 대금할인(discounting receivables)까지 할 수 있어 카드 이용은 크게 확대되었다²⁷⁾. 그러나 이 당시 카드는 가맹점수수료에 의존하는 대행카드였고, 미국의 다른 州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약으로 인해 사용이 중단되다가²⁸⁾, 차차 대·소형은행이 카드 산업에 참여하였다.

미국의 신용카드 발달과정을 고객카드, 접객카드, 은행카드로 구분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 표Ⅱ-1 >과 같다.

< 표Ⅱ-1 > 미국의 신용카드 발달과정

고객카드 (Customer Card)	1894. "Hotel Credit Letter Company" → 최초 신용카드 개발
	1914.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 of California" (현Mobil oil) → 최초 신용카드 발행
접객카드 (T & E Card)	1951. Diner's Club Card발행
	1958. American Express Card발행
	1959. Carte Blanche Card(Hilton Credit Corporation)를 발행
은행카드 (Bank Card)	1951. 롱아일랜드의 프랭클린은행 → 최초의 은행계 카드 (매출전표 개발)
	1959. 채이스맨하탄 은행(CMB,동부의 뉴욕주) → 유니-서브(Uni-Serv) 회사로 전환
	1959. Bank of America 은행(BOA,서부의 캘리포니아州) → National Bank Americard. Inc.(NBI)로 전환
	1966. 미동부 뉴욕14개은행 연합 → Interbank Card Inc.설립 ①
	1967. California의 3개은행이 서부은행카드협회 설립(Western State Bank Card Associate) → Master Charge Card를 발행②
	1967. ①과 ②는 Interbank Card Association(ICA)이란 회사로 합병
	1977. Bank Americard와 Visa International제휴 → VISA Card 발행
	1979. ICA는 Master Card International(MCI)로 변경
1983. MCI는 Master Card로 변경	

***자료) Tony Drury & Charles W. Ferrier, "Credit Card", Butterworths Co., 1984, p.20.

27) 강경모, 「알기 쉬운 신용카드」, 선영사, 1996, 22쪽.

28) 한상문, 앞 주10)전계서, 39~40쪽.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급속히 발전하는 신용카드를 규율하기 위해 “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FCCPA)” 를 제정하게 되었다²⁹⁾.

특히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로 처리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서 규모의 경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업자들은 대형화하거나 합병(M&A)하는 경향이 있다. 1998년 4월 14일 미국의 대형은행인 Nations Bank (동부지역)와 Bank of America(서부지역)가 합병하였고, 중소은행인 Bank-One은행과 First Chicago은행이 합병하면서 미국 은행계를 이끌고 있다. 카드업계를 이끌고 있는 이들 중·대형 은행들의 합병은 전세계 카드업무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2) 英國

영국은 미국계 카드회사들(Diners Club)이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그 이용이 확대되었다. 영국의 카드업계의 주류는 1966년 “버클레이 카드(barclay card)와”, 1972년 “엑세스 카드(Access Card)” 이다. 이들은 각각 VISA와 마스터카드와 체인을 맺었다. 그후 1978년에 Trustee Savings Banks Group은 비자카드를 기초로 “TSB Trust Card” 를 발급하게 되었다³⁰⁾. 이들 은행계 카드는 카드발급시 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T&E Card(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클럽, 유러카드)는 카드발급시 수수료와 구매한도 초과시 과태료를 회원이 부담하고 있다.

영국은 1974년 크레딧 카드 규제를 위한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CCA)” 을 제정하였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규제법을 제정하기 전의 상태는 비슷하지만, 영국의 소비자신용법(CCA)에서는 신용 수단을 사용하여 체결되는 신용계약을 ‘신용증표계약(Credit token agreement)’ 이라 하여 용어상 미국과 구분된다.

29) 김대규, “신용카드거래의 법적 성질과 손실부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 대학원, 1996, 24쪽.

30) Gordon Borrie & Aubrey L. Diamond, “The Consumer Society and the Law”, 4th ed., Penguin Books Co., 1984, p.239. ; 김대규, 앞 주)상계논문, 24쪽 재인용.

(3) 獨逸

독일의 신용카드의 기원은 1968년 5월에 프랑크푸르트市에서 독일의 주도로 열린 “유럽 15개국 은행 대표자 회의”를 기초로 동년 제2차 회의에서 유러체크(Eurd check)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기로 결정한 때로 보고 있다³¹⁾. 이들 중 유럽의 13개국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와 다이너스클럽 등 크레디트 카드사에 가입한 “유러카드(Eurd Card)”를 발급하여 보급하고 있다³²⁾. 그 후 赤青色의 European Communities Symbol을 채택하여 1969년 5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수표카드도 발급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Eurd check은 독일과 유럽의 주요지급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급 의사 없이 카드를 발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급증하는 신용카드 문제점과 입법상의 흠결을 해결하기 위해 1986년 제2차 “경제범죄대책법”(1986. 5.15.공포, 동년 8.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독일형법의 일부 개정법)을 신설하였다.

(4) 日本

일본의 은행들은 처음에는 수표보급(개인신용수단)에 관심을 가졌으나 점차 소비자금융의 핵심은 신용카드임을 자각하여 1960년 12월에 미국의 다이너스 클럽사와 日本 交通公社, 후지銀行 등이 공동 참여하는 “日本 다이너스클럽 카드”를 설립한 것이 효시이며³³⁾, 1961년 1월 삼화은행 외 5개은행이 일본 크레디트 뷰로(Japan Credit Bureau : JCB)가 “JCB Card”를 발행하였으며, 1967년에 미쓰비시 은행(다이아몬드 크레디트카드), 스미토모 은행(스미토모 카드), 1969년에는 토카이 은행(밀리언 카드), 5개 도시은행이 연합한 “유니온 크레디트카드”가 차례로 보급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의 크레디트 카드사와 제휴하여 진출하였다.

31) Tony Drury & Charles W Ferrier, “Credit Card”, Butterworths Co., 1984, p.35.

32) Tony Drury & Charles W Ferrier, Ibid.31), p.35.

33) 김문환, 「신용카드 이야기」, EM문고, 1992, 34쪽.

일본의 백화점은 1967년 이후부터 카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988년에는 범용 카드가 등장하여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달된 전자기술을 바탕으로 IC카드 내에 CPU가 내장되어 자기카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카드가 개발되었고 프리페이드카드(Free Paid Card)로 원카드(One-Card)시스템이 실용화되고 있다. 일본의 카드업계도 미국과 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전자화의 발달과 타업종간의 제휴확대, 국제화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선불카드가 도입되어 많은 발전을 거두었고 크게 세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다. 첫째, 서비스업종(주차장, 미용실, 세탁소 등)처럼 소액결제가 번번이 일어나 잔돈 처리가 필수적인 곳에서 사용되고 둘째, 외식업종(커피전문점, 레스토랑, 제과점 등)에서 고정고객 확산을 위한 곳 셋째, 유통소매업(백화점, 슈퍼마켓, 주유소, 서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마루타카社は 선불카드를 슈퍼마켓에서 사용할 때 잔돈을 거슬러주는 대신 자기테이프에 기억시켜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고객들이 카드로 물건값을 지불토록 하는 방법까지 개발하였다.

(5)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7월 신세계백화점이 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세계카드”를 발급한 것이 최초였다³⁴⁾. 이것은 제한목적카드, 양당사자 카드에 속한다. 신세계백화점에 이어 1970년 조선히otel, 1974년 5월에는 마도파백화점도 카드를 발행하였다. 우리나라에 삼당사자 카드가 등장한 것은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이다. 즉, 국내계 카드로는 1978년에 카드전문회사인 한국신용카드(株)가 “Korea Card(KOCA카드)”를, 동년 9월에는 「코리언 익스프레스」(Korean Express)사가 “Korean Express카드(KE카드)”를 발급하였다. 또한 동년에 대한보증보험사가 “KC카드”를 발행하였고, KC카드의 회원과 가맹점은 1982년 4월 국민은행으로 흡수되었다.

34) 신용경제편집부, “우리나라 카드산업의 현주소”, 「신용경제」, 1987. 11, 99쪽.

외국계 카드로는 1984년 4월 외국환관리규정의 완화로 “Diners’ Club Card”와 “American Express(Amex)” 등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① 銀行系 信用카드

신용카드업법(1987. 5. 30. 제정)이 제정되면서 은행계 신용카드사들이 독립법 인화되었고, 전 금융기관이 기존 은행계 카드와 제휴하거나 국제 카드사와 제휴하여 각 은행별 카드를 발급하고 가맹점을 두게 되어 카드 보급의 확산은 물론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신용카드의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 다음의 < 표II-2 >는 우리나라 은행계 신용카드사의 발달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 표II-2 > 은행계 신용카드사 발달과정

(97년 12월말 현재)

카드사 구분	국민(주) Kookmin	비씨(주) BC	외환(주) KEB	장은(주) KLB
업무개시	1980. 9.25. **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영업인가 제1호	1982.6.7(5개시중은행) 1984.6.1.(3개특수은행) 1985.6.1.(4개지방은행) 1986.8.1.(충청은행)	1978. 4. 10.	1988. 4.
법인설립	1987. 9. 25.	1983. 9.	1988. 7. 1.	1987. 10.
기본발행 카드	국민카드(80.9.25) 국민마스타카드 (84.12.15) 국민비자카드(90.1.15)	비씨카드 (82.6.7) 비씨 JBC(83.4.1) 비씨 마스터(83.6.1) 비씨비자카드(91.8.1)	VISA (78.4.10) MASTER (93.3.15)	장은카드 (87.10.) VISA (90.4.)
설립은행	국민, 한미, 하나, 평화, 축협, 수협, 씨티 (7개)	5개시중은행 (서울,조흥,상업, 제일,한일) 3개특수은행 (농협,기업,한국주택) 5개지방은행 (대구,부산,경기, 경남,충청) (13개)	외환,신한, 동화,보람, 제주,광주, 전북,강원, 충북,대동, 동남 (11개)	장기신용 은행 (1개)
회원구분	특별회원 우대회원 일반회원	골드회원 우량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	골드회원 CLASSIC 회원

***자료) 각 카드사 제공

② 專門會社系 信用卡

전문회사계 신용카드는 재벌그룹사를 대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제휴사를 구성하여 방대한 조직망을 기반으로 업무를 형성해 나간다. 전문계 신용카드사는 경제 규모의 확대와 건전한 소비 풍토의 확산 및 소비자의 의식구조 개선에 힘입어 전문회사계 카드의 확산과 보급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 표Ⅱ-3 >은 우리나라 전문사업계 신용카드사의 발달과정이다.

< 표Ⅱ-3 > 전문사업계 신용카드사 발달과정

(97년12말 현재)

카드사 구분	엘지 LG	삼성 SAMSUNG	동양 AMEX	다이너스 Diner's Club
업무개시	85. 12. (87.7.Korean Express인수)	88. 9. (88.3.KOCA 인수)	84. 4. (국내카드 발급시작)	84. 4. (국내카드 발급시작)
법인설립	88. 3. 27.	88. 3. 30.	80. 2. (지사설립)	84. (지사설립)
기본발행 카드	LG카드(88.3.27) LG마스터(88.9.16)	위너스(88.3.30) 위너스마스타(89.3.1) 멤버스클럽(92.6.15)	AMEX (84.4)	Diners (84.4)
설립회사	럭키금융그룹	삼성그룹	한국지사	한국지사
회원구분	특별회원 우대회원	골드회원 우대회원 일반회원	골드회원 일반회원	골드회원

***자료) 각 카드사 제공

③ 販賣店系 信用卡

판매점계 신용카드는 해당 판매점의 매출 창출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로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계 카드이다. 백화점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 점포와 일부의 계열 점포에 한정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가입시키고 가입된 회원이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 일반구매 또는 신용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제품에 대하여는 할부판매는 물론 할인서비스 등의 구매력 창출을 높이기 위한 판매

를 하여 줌으로써 소비자인 회원들의 이용을 도와주는 카드이다. 신세계 백화점, 미도파 백화점, 현대 백화점, 롯데 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등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백화점들이 카드를 발급하여 고정고객으로서의 회원을 넓히고 있다.

3. 우리나라 信用卡業 現況

(1) 所有 및 財務構造

97년 12월 현재 8개의 카드사, 즉 4개의 은행계(국민, 비씨, 외환, 장은)와 4개의 전문업체(삼성, 엘지, 다이너스, 동양)카드사가 있고 약 80여개의 유통업자가 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인 경우 대부분 후발 은행들로서 가맹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맹점공동이용체제로 카드를 하고 있고 현재 30개의 제휴은행(가맹점)이 있다. 먼저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4개의 은행계 카드사는 각각 자회사를 두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각각의 직영은행은 가맹점을 공동이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자회사를 설립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시중은행 및 농협이 독자적인 자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업체인 경우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금융업진출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어, 삼성카드는 삼성전자가 51.6%의 지분을, LG신용카드는 LG전자가 33.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⁵⁾. '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발효직후 舊,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기존사들은 구조조정 기간에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이 기간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신규설립을 억제토록 하고 있다. 인가제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98년부터 카드사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신규등록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5) 서근우 외 3인, “여신전문금융기관 구조개편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7. 9. 71쪽.

(2) 신용카드 發給數

카드업은 국민의 소비증대와 신용카드사용 관행의 정착으로 90년대 이후 사용 규모가 매년 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표Ⅱ-4 >의 신용카드 8개사를 1991년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더해진 증가 수와 그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 표Ⅱ-4 > 신용카드 발급수

(단위 : 천매)

구분 년, 월	국민 Kook min	비씨 BC	외환 KEB	장은 KLB	삼성 SAM SUNG	엘지 LG	다이너스 Diners	동양 AMEX	합계 Total
1992 (%)	3,457 (21)	6,309 (12)	2,215 (41)	65 (8)	1,387 (37)	1,198 (35)	74 (20)		14,705 (22)
1993 (%)	4,094 (18)	7,670 (22)	2,711 (22)	214 (229)	1,989 (43)	2,034 (70)	122 (65)		18,834 (28)
1994 (%)	4,952 (21)	10,074 (31)	3,767 (39)	355 (66)	2,527 (27)	2,736 (35)	172 (41)		24,583 (31)
1995 (%)	6,145 (24)	13,496 (34)	5,080 (35)	496 (40)	3,429 (36)	3,583 (31)	242 (41)	67	32,538 (32)
1996 (%)	6,998 (14)	16,023 (19)	5,689 (12)	562 (13)	5,678 (66)	4,850 (35)	326 (35)	131 (96)	40,257 (24)
1997.9. (%)	7,323 (4)	16,301 (1)	6,098 (7)	595 (6)	6,993 (24)	5,888 (21)	388 (9)	161 (23)	43,747 (8)

*** 자료) 계간 신용카드, 1997년 12월호

*** 주) 1. 각각의 수치는 개인회원, 기업회원을 합한 수

2. 국내전용카드(Local Card)와 국내외겸용카드를 합한 수.

단, 외환·장은·다이너스·동양카드는 로칼카드 발급이 없음.

신용카드 발급이 1995년도에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금리자유화에 따라 기존금융 기관과 삼성이나 엘지와 같은 신규 전업계 카드사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회원수 확보에 주력한데 기인하고 있다³⁶⁾.

일반적으로 카드 발급으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은 ①가맹점수수료, ②회원의 연회비, ③소비자금융의 금리수입(현금서비스, 카드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급율이 떨어졌는데, 가맹점에게는 카드수수료(3-4%)가 부담스럽게 되었고 물품을 매대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영업 성과를 볼 수 있는 불편함으로 인해 가맹점 확보가 어렵게 되었으며, 회원입장에서도 카드를 보유하고는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가 45%나 이르고 있어 신용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⁷⁾. 그리고 카드사 입장에서 볼 때, 금융서비스 이용이 대부분 현금서비스에 그치고 있고 늘어만 가는 부실채권 때문에 카드발행매수의 증가가 반드시 수익을 가져오지는 못하게 되었다. 업계별 당기순이익은 0.1%인데 비해 연체금액은 1.76%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드1매를 생산하는데 드는 돈이 약5만원 정도라고 하니, 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카드회원확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 규모의 회원으로 내실을 기할 것인지를 따져 가장 효과적인 최소비용선(Minimum Cost Line)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加盟店現況

가맹점수는 1997년 9월 현재 400만개로서 1991년도를 기준으로 193% 증가하였다. 이것은 < 표Ⅱ-4 >의 신용카드 발급증가율(145%)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 표Ⅱ-5 >에서 알 수 있듯이 후발주자였던 전업계 카드사가 은행사의 증가율보다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서근우, “신용카드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7. 4, 78쪽.

37) 이명식, “향후 신용카드산업의 발전과제”, 「계간 신용카드」(제10호), 1996.3, 22쪽.

< 표Ⅱ-5 >

회사별 가맹점 수

(단위 : 천점)

구분 년, 월	국민 Kook min	비씨 BC	외환 KEB	장은 KLB	삼성 SAM SUNG	엘지 LG	다이너스 Diners	동양 AMEX	합계 Total
1992 (%)	150 (13)	193 (21)	239 (34)	4 (33)	189 (31)	149 (26)	24 (-20)		948 (24)
1993 (%)	230 (53)	288 (49)	268 (12)	4 (0)	262 (39)	219 (47)	76 (217)		1,347 (42)
1994 (%)	362 (57)	399 (39)	378 (41)	4 (0)	338 (29)	302 (38)	179 (136)		1,962 (46)
1995 (%)	506 (40)	530 (33)	502 (33)	7 (75)	434 (28)	416 (38)	271 (51)	18	2,683 (37)
1996 (%)	635 (26)	653 (23)	604 (20)	6 (-14)	586 (35)	442 (6)	370 (37)	72 (300)	3,368 (26)
1997.9. (%)	743 (17)	746 (14)	663 (9)	6 (0)	726 (23)	536 (21)	456 (23)	128 (77)	4,004 (18)

***자료) 계간 신용카드, 1997년 12월호

(4) 신용카드 利用實績

신용카드의 이용실적은 영업개시일자가 앞서고 있는 은행계열의 카드사가 시장점유율에서 전문계 카드사보다 높으며 전체적으로 현금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표Ⅱ-6 >은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추이를 살펴본 바, 은행계와 전업사, 신용구매와 현금서비스, 국내사용과 국외사용으로 구분·정리하였다.

< 표Ⅱ-6 >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단위 : 억원, %)

	1994년(구성비)	1995년(구성비)	1996년(구성비)	1997년(구성비)
계	410,768(100.0)	515,817(100.0)	613,197(100.0)	1,004,055(100.0)
은행계	318,491(77.5)	407,976(79.1)	448,839(73.3)	707,804(70.5)
전업계	92,297(22.5)	107,841(20.9)	164,358(26.7)	296,251(29.5)
신용구매	190,108(64.5)	251,517(57.2)	317,711(51.8)	530,195(52.7)
현금서비스	220,660(35.5)	264,300(42.8)	295,486 (48.2)	473,860(47.3)
국내사용	405,144(98.6)	506,547(98.2)	600,186 (97.9)	984,691(98.1)
해외사용	5,624(1.4)	9,270 (1.8)	13,011 (2.1)	19,364(1.9)

***주) 기간 신용카드, 1997년 12월호

한편 대부분의 카드사는 보험대리, 여행알선, 통신판매 등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들 부문의 영업이 90년대 들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최근의 이용실적의 둔화는 1993년~1994년 기간 중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여타 금융산업보다 평균적 성장을 거두고 있다. 신용카드의 이용실적 증가율은 경기현황의 영향을 받지만 정책당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규사용 관련규정과 회원에 대한 규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환 관리규정 제6-25조에서 제6-29조의 3, 제17-15조 등이 신용카드와 관련된 규정이며, 이중 회원과 직접 관련된 규정은 외국환 관리규정 제6-28조 및 제17-15조이다.

1996년 6월 22일부터 외국환관리규정 제6-28조(보고 및 사후 관리)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전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월간 미화5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違規使用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결과 違規金額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외국환 관리규정 제17-15조(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제재)³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위규 사용금액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
- ② 위규 사용금액이 미화 1,000불 초과 3,000불 이하인 경우 및 과거 3개월 간 제1호에 의거 경고를 받은 자가 제재일 이후 위규 사용으로 다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간 신용카드 해외사용자격 정지
- ③ 위규 사용금액이 미화 3,000불 초과 5,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간 신용카드 해외사용자격 정지
- ④ 위규 사용금액이 미화 5,000불 초과인 경우에는 1년간 신용카드 해외사용자격 및 위규 사용자 주소지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
- ⑤ 신용카드 사용자자격정지 기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당초 사용자자격정지 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의 신용카드 해외사용자격 정지 및 위규 사용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
- ⑥ 제6-28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한 위규자인 경우에는 1년간 신용카드 해외 사용 자격 정지 및 위규자 주소지관할 경찰서장에 고발.

또한 신용카드로 월 미화 5천 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이전에 신용카드 발행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외국환관리규정 제6-21조 및 제6-22조 제4항 제4호).

이처럼 신용카드 통합 관리로 인해 사용금액의 한도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외국사용 실적은 늘기만 하고 있다.

(5) 不實債權

카드시장에서 산재하는 문제점 중에서도 연체채권이 큰 고민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의 경우는 다음의 < 표Ⅱ-7 >에서처럼 매년 증

38) 위규금액 = 신용카드총 사용액 + 환전금액 - 기본경비(1만불) - 직접경비(교통비, 숙박비 등)
- 외화미사용금액(30일 이내)

가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 연체규모는 91년도의 2,711억원에서 95년도에는 7,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체증가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신용사회의 정착이 미흡한데다가 카드사간 과다경쟁으로 카드발급조건을 너무 완화하거나 자격심사를 소홀히 하는데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이용액 기준 연체율이 3%를 크게 상회하는 등 신용카드 관련 부실채권이 과다하여 신용카드업 지속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 표Ⅱ-7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규모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별	1991	1992	1993	1994	1995
합 계	2,711	2,794	1,970	4,437	7,000
은행계	2,522	2,592	1,685	2,873	4,500
전문계	189	202	285	1,564	2,500

***자료) 한국신용카드업협회 자료 및 「신용경제」 1997년 12월

이와 같은 연체율은 신용카드 납발이 더욱 심한 백화점카드의 연체율에 비해 서도 크게 높은 편으로 신용카드 사업자들이 채권회수 업무에 관심도가 낮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資金調達 및 運用

자금조달에 있어서 은행계 카드사와 전문계 카드사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은행의 카드계정을 통한 차입이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고, 전문계 카드사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 자회사로서 은행 차입보다는 주로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카드사의 자금운용은 신용카드 잔액이 전체의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나 카드론, 할부금융, 팩토링 등의 부대금융 잔액 또한 전체의 20% 내외를 차지하여 부대금융사무가 카드사 업무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國際比較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소비자 신용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얻어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⁹⁾.

첫째 한국의 신용카드 발급수와 이용금액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왔다. 발급수의 경우 미국은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일본은 80년대 후반에 빠르게 증가해오다가 최근에는 증가가 크게 둔화되었다. 日本에서 경제규모에 비해 카드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거래 결제수단이 여전히 현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처럼 거래 결제수단이 수표거래인 사회에서 사용자가 번잡하고 불안한 수표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카드를 선호하게 되어 카드 쪽으로 이행해 간 것과 대조를 이룬다.

둘째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연간 이용액 기준)는 한국이 일본보다 많다. 전체 이용금액 중 현금서비스의 비율이 51.3%로 일본의 27.3%보다 높다.

셋째 신용카드를 이용한 판매신용(1994년 연간 이용액 기준)에선 한국, 미국, 일본순이다.

넷째 전체 판매신용(모든 할부금융 포함)은 한국, 미국 일본순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여섯째 미국의 카드를 이용한 판매신용은 대부분이 회전신용이며,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판매신용은 자동차론, 이동주택론 등의 할부금융으로 회전신용보다 크다.

39) 배준호, "카드이용 증가의 요인과 거래안전의 확보", 「계간 신용카드」(제12호), 1996. 9, 49~50쪽.

Ⅲ. 신용카드의 機能과 種類

1. 機能

신용카드업자 측에서 신용카드의 기능은 신용기능·결제기능·금융기능·고객·정보수집기능·ID기능이 있다⁴⁰⁾.

(1) 信用機能

이 기능은 월부 또는 외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자금의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하든지 또는 분할 지급하는 기능이다.

(2) 決済機能

이것은 cashless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소지없이 카드에 의하여 결제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용대금의 지불은 일정기간후에 하게 되겠지만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용기능과의 차이가 있다. 신용기능과 결제기능은 이용자의 사용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발행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기간후에 지불한다는 현상면에서만 보면 신용기능과 결제기능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나 장래수입을 생각한 것과 소지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주기능인 결제기능이 무난히 수행되는 이유는, 신용카드의 간편성(easiness), 안정성(security), 기록정리성(recording), 실시간(real time) 때문이다.

(3) 金融機能

카드에 부가되어 있는 현금서비스 등의 소비자금융, 즉 인출기능을 말한다.

40) 植田 蒼, “クレジット・カードの知識”, 日本經濟新聞社, 1990, 138~143面.

(4) 顧客情報蒐集機能

이 기능은 주로 유통업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기능이다. 금융기관구좌의 동태는 개인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 그 지출내역으로 그의 생활양식과 취향까지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카드입회시의 조사는 그 사람의 직업·주거·가족구성 등 개인의 주변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백화점 등의 대형소매업에서는 POS에 의하여 얻어진 상품정보에 카드로 얻어진 고객정보를 종합하여 더욱 세밀한 마케팅을 시도할 수 있다. 고객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판매를 하기 위하여는 고객정보를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5) ID(신분표시)機能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이지만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에게만 발행되므로 사회적 지위나 신용도를 입증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택된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었던 Diners Club이나 AMERICAN EXPRESS와 같은 카드는 그 소지 자체로서 각별한 신용을 얻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사진과 개인의 정보를 함께 입력한 IC카드의 등장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 이외의 기능으로 외환기능, 부대서비스기능, 우대기능도 있다. 이 기능들은 option 또는 카드회원에 대한 서비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信用卡의 類型

현실의 카드去來는 다종다양하여 법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카드의 用途, 目的에 따른 分類

신용카드의 이용목적이 제한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제한목적카드(limited purpose credit card)와 전목적카드(all purpose credit card)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백화점계 카드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국내외의 은행계 카드와 카드발행전문회사 카드이다.

(2) 카드의 使用可能地域에 따른 分類

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國內카드와 국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國際카드로 나눌 수 있다. 國內카드는 백화점신용카드와 국내카드, BC카드 등이고 國際카드는 VISA카드, MASTER카드로서 이는 외환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3) 當事者の 數에 따른 分類

① 兩當事者카드(Two-Party Card)

양당사자 카드는 카드발행인(Card Issuer)과 카드회원(Card Holder)의 두 당사자로 구성된다. 백화점신용카드가 대부분인 이 카드는 카드발행인과 카드회원 사이에 하나의 법률관계만 성립하므로 카드 대금결제가 간단하며, 항변권의 절단문제도 생기지 않았으며, 회원규약의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사법의 일반이론에 의해 규율 받게 된다.

② 三當事者카드(Three-Party Card)

3당사자 카드에는 카드발행인(credit card establishment)과 카드회원(members), 그리고 가맹점(merchant)의 3당사자가 존재한다. 이 3당사자 카드에는 카드발행인과 카드소지인간의 회원계약, 카드발행인과 가맹점간의 가맹점계약, 카드소지인과 가맹점간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양당사자 카드보다 법률구조가 복잡하다.

③ 多當事者카드(Multi-Party Card)

다당사자 카드는 3당사자 카드에 있어서의 카드발행인의 역할을 다시 카드발행인과 은행이 분담하는 형태이다. 즉, 카드의 발행은 카드발행인이 하고 카드회원에 대한 청구서의 발송과 수금은 은행이 대행한다.

다당사자 카드는 복수의 은행에 의하여 공동 발행되어 많은 가맹점에서 통용

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발행회사가 단일기업체가 아니라 각각의 참가은행이 모두 각각의 신용카드 회사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은행카드(Bank Card)라고도 하는데 마스타카드, VISA카드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공동 참가하여 발행하는 BC카드가 이에 속한다.

(4) 代金支給方法에 의한 分類

① 一時給信用卡

신용카드의 거래로 인한 대금의 지급을 일정한 기일까지 일괄 유예하였다가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신용카드이다.

② 分割給信用卡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전액상환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회로 나누어 상환할 수 있는 신용카드이다. 할부구매의 한도와 분할납입의 횟수의 일정한 제한이 있다⁴¹⁾.

③ 回轉式信用卡(Revolving Credit Card)

회전식 신용카드란 카드회사가 카드회원별로 일정한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두고 그 한도내에서는 카드대금결제일에 반드시 상환할 필요가 없이, 계속하여 회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말한다⁴²⁾. 이는 판매신용과 소비자금융의 기능을 함께 가진 미국에서 일반화된 카드의 형태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4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개정회원 약관은 할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비씨회원규약 제6조 제2항).

42) 예를 들어 Credit Line이 미화500불인 회원이 600불을 사용한 경우에, 그 초과분인 100불은 결제일에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나, 한도액 500불은 결제일에 상환할 필요가 없이 카드이용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회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第 2 節 信用卡去來構造 概觀

I. 去來構造 5段階

소비자신용거래는 크게 다섯 단계(①신용신청 ②신용계약 ③신용대금의 청구 ④신용대금의 수금 ⑤신용정보에 관한 자료의 처리)로 나눌 수 있다.

① 신용신청단계(회원 : 카드사)

신용카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원규약내용상의 기재사항을 적어서 입회를 신청(청약)하면 카드발행사는 그 신용과 적격성을 적절히 검토하여 입회가 인정(승낙)된 신청자에게는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다.

② 신용계약단계(회원 : 가맹점)

카드회원은 미리 카드회사와의 가맹점규약을 통해 선정된 신용조직의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경우에 발급 받은 카드를 제시하여 소정의 매출전표(sale slips)⁴³⁾에 카드번호 등을 기계로 압인(embossing)한다. 회원은 일종의 구매계약서인 매출전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에 서명한다. 이로써 구매나 서비스계약이 체결된다.

③ 신용대금 청구단계(가맹점 : 카드사)

가맹점은 3매의 매출전표 중 1매는 카드회원에게 건네주고 1매는 가맹점이 보관하며, 나머지 한 매는 지급청구를 위해 카드회사에 송부한다. 카드발행회사는 그 신용판매대금에서 수수료(대개 2.5-5%내외)를 공제한 금액을 회원에 갈음하여 가맹점의 거래은행의 예금계정에 입금한다.

④ 신용대금 수금단계(카드사 : 회원)

카드발행회사는 매월 일정일까지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수취 계산하여 그 금

43) 이는 매상표, 매출표, 판매전표라고도 불리는데 매매대금액, 날짜, 신용판매당사자 등이 표시되고 회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액에 대한 청구서를 보낸다. 이에 따라 카드회원은 규약에 정한 매월의 일정기일에 대금상당액을 은행 지로(giro)의 방법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자동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EFT)를 통해 회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⑤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처리(카드사간) 카드사는 부실거래자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기도 하고, 신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도 한다.

II. 根據法規

미국에서는 국민경제개발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는 소비자신용 정착을 위해 여러 법률을 마련해 두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제법률들이 소비자신용거래의 5단계마다 마다 법률을 구성하여 신용정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신용신청”의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성별·인종·종교 또는 결혼의 유무를 근거로 한 차별을 받지 않고 신용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제공회사로부터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신용평등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ECOA)이 197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⁴⁴⁾.

둘째, “신용계약”시에 소비자가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가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신용계약시에 이자율이나 금융비용에 대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소비자신용법(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FCCPA)의 일부로 1968년 5월에 최초로 제정된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 TILA)이다⁴⁵⁾. 신용거래 조건의 개시 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진실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신용조건의 개시와 비개시에 관하여 신용제공회사가 사용한 기만적인 술책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44) 김문환, “신용카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비자생활연구』(제11호), 1993. 6, 9쪽.

45) 송명선,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법적 연구 : 회원보호의 관점에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대학원, 1991, 16쪽.

동법은 소비자신용비용개시법(*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Act*, CCCDA)이라고도 한다⁴⁶⁾.

셋째, 소비자에 대한 “신용제공대금의 청구”에 관련해서는 공정신용대금청구법(*Fair Credit Billing Act*, FCBA)이 있다⁴⁷⁾. 1975년에 발효된 동법은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빈번히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개선하였다. 미국에서도 소비자신용거래에서 채무자가 청구의 근거와 금액이 틀린 청구서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불안을 청구하는 절차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응답이나 정정 조치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당황하기 일쑤이다. 또한 채권자의 집요한 반복적 청구에 대응하는 번잡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에 굴복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명확히 시정하기 위해 동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대금청구의 실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모든 신용제공자들은 이러한 항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넷째, 은행 등 신용제공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는 공정채권회수관행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se Act*, FDCPA)이 있다. 동법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인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과의 충돌 문제를 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해결한 것이다⁴⁸⁾.

다섯째,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충돌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신용조사기관의 폐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공정신용조사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이 1970년에 마련되었다⁴⁹⁾. 동법은 소비자신용조사에 대한 보고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보고자료의 준비와 이용에 관련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데 있

46) 김문환, 앞 주44)전계논문, 9쪽.

47) 김문환, 앞 주44)전계논문, 10쪽.

48) 김문환, 앞 주44)전계논문, 10쪽.

49) 김문환, 앞 주44)전계논문, 10쪽.

다. 동법은 고도로 발달한 개인신용조사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ies)을 규제하며, 동시에 그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를 꾀하고 부정확, 불필요한 정보에 의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비밀유지의 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그들에 관한 신용정보 보고서류에 대한 접근권과 이러한 서류에 들어 있는 문제가 된 정보에 대한 항변권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거래와 관련 있는 법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정도 마련된 상태에서 카드시장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산재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 와서 신용사회를 목표로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이 제정·개정이 거듭되었고, 신용카드업법도 개정되어 다각 면에서 수정·보안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거래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카드회원규약, 가맹점규약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카드규약, 가맹점규약과 계좌자동이체규약 등은 일종의 보통거래약관이다⁵⁰⁾. 보통거래약관(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이라 함은 다수의 집단적 계약을 위하여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에게 계약체결에 즈음하여 제시하는 일체의 계약약관을 말하며, 일반거래약관 또는 줄여서 약관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각종의 거래가 집단적,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의 형태를 취한다. 이 점에서 약관은 계약자유와는 상반되지만, 계약을 간이, 신속, 원활하게 한다는 이점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1976년의 普通去來約款法(AGB-Gesetz), 영국은 1977년의 不公正契約約款法(Unfair Contracts Terms Act)이란 성문법을 제정하여 규약을 입법적으로 규

50) 이은영, “서독의 보통거래약관법”, 「법조」(27권 3호), 1978. 3. 129쪽.

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와서야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1986年 12月 31日 法律 第3922號 ; 1987년 7월 1일 발효)” 을 마련하였는데 위의 카드회원규약 등은 동법의 적용도 받는다.

약관 규제법상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제4조) : 약관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당해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 ② 객관적 비교·분석 통일적 해석의 원칙(제5조 제1항) : 약관은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 비교·분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 ③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제5조 제2항)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제한해석의 원칙 : 약관중 면책조항 등과 같이 기업측의 유리한 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⑤ 신의성실의 원칙(제6조 제1항)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상술한 규약내용이 당사자일방에게 극히 불리한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적용이 거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Ⅲ. 신용카드去來의 法律關係

신용카드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인 카드회원(cardholder), 카드발행회사(card issuing company), 가맹점(merchant establishment)에 의한 회원계약, 가맹점계약, 구매계약으로 구성되고 대개는 여기에 “거래은행”이 개재한다. 다시 말하면 카드이용의 법률관계는 카드발행인과 카드회원간의 법률관계(회원계약), 카드발행인과 카드가맹점간의 법률관계(가맹점계약) 및 카드회원과 카드가맹점간의 법률관계(매매계약)인 삼면의 법률관계로 성립한다⁵¹⁾.

51) William B. Davenport, “Bank Credit Cards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85 Banking Law Rev., 1968, pp.941~950.

1. 會員契約

카드발행회사와 카드회원간의 법률관계는 이른바 회원계약이라고 불리는 普通去來約款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⁵²⁾. 그러므로 회원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입회신청서를 작성하며, 입회신청서에는 회원계약이 인쇄되어 있다.

(1) 카드會員의 成立時期

카드회원이 되는 시기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지는데 신용카드를 일종의 증거증권으로 보는 지배적인 학설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계약의 성립시기는 신용카드회사가 입회신청서를 받고 신용조사 등을 마치고 회원으로 인정한 때로 보는 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⁵³⁾.

사건으로 카드회사에서 입회신청서를 송부하는 것은 청약으로 보고 회원이 보통거래약관인 회원규약을 승낙하는 때에 카드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신용카드회원계약의 내용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內容

회원규약에는 회원자격, 카드의 발행, 회비(입회비와 연회비), 카드의 사용법, 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방법, 카드의 유효기간, 카드의 도난·분실의 경우의 조치, 신고사항의 변경, 회원자격의 취소 등이 정해져 있다. 또한 카드의 이용한도액도 이 계약에서 정하며 이는 카드의 종류, 카드회사에 따라 달라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각호의 이용한도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용통의 최고한도 : 월 70만원
2. 직불카드의 1회 이용한도 : 10만원

52) 정봉운, "신용카드 거래약관의 연구", 「사법행정」(통권 311호), 1986, 23쪽.

53) 이흥범, 「신용카드거래상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4, 28쪽.

3. 직불카드의 1일 이용한도 : 50만원

4.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 : 10만원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3) 會員規約의 變更

회원규약의 변경은 계약법의 원칙상 당연하나 수많은 카드회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절차상 용이한 일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카드의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신 카드를 교부하게 되는 경우에 변경된 규약을 회원에 제시하여 신 규약을 승인 받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된 규약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엔 카드 재발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카드 송부시에는 카드회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인 카드의 송부행위로 본다⁵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으므로 같은 견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카드회사들이 자주 회원규약을 바꾸거나 추가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원규약의 경우 “규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용 통지문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소급하여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 528 ①)에 비추어 볼 때 효력이 문제된다. 그러나 집단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지 받은 후에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변경약관의 승낙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加盟店契約

양당사자 카드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없으므로 가맹점계약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삼당사자 카드나 다당사자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발행회사와 가맹점간의 법

54) 吉原省三, 註釋25)前掲論文, 117面.

를관계는 가맹점규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가맹점계약에서는 신용판매와 대금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가맹점은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고객보다 카드회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카드회사와 약정한다.

이 가맹점계약도 카드발행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보통거래약관이므로 카드발행회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⁵⁵⁾.

구체적으로 가맹점규약에는 카드서명의 확인의무, 사고카드의 취급금지, 차별대우의 금지, 신용판매의 제한액, 매출전표의 송부, 지급방법, 수수료, 가맹점 표시의 설치의무, 계약기간, 계약위반의 경우의 조치가 정해져 있다.

3. 賣買契約

카드회원과 가맹점과의 관계는 보통의 매매계약이지만, 음식 등 서비스 제공계약의 거래이며, 대금결제가 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이다. 즉 가맹점은 물품이나 서비스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과인 동시이행의 항변권(民法 第536條)을 갖지 못하고 단지 매출전표의 서명과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만 카드회원과 가맹점간의 매매계약은 보통의 “판매계약” 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⁵⁶⁾.



55) 정동윤, 앞 주52)전계논문, 26쪽.

56) 이은영, 앞 주50)전계논문, 217쪽.

第 3 節 信用卡去來에 대한 學說

신용카드의 거래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카드회원에게 다시 구상하는데 이러한 대금지급 관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문제이다. 이 문제는 회원과 가맹점과의 이해관계가 항변의 절단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카드회사와 카드회원간의 직접적인 대금청구권의 법적 근거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회원규약과 가맹점규약에는 명백한 법률이 없다.

이에 각국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학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 . 主要國家의 學說

1. 美國의 學說

신용카드제도는, 그것이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서조차 처음에는 독자의 법이 없는 채 보통법(common law) 즉 판례법의 법리에 의하여 규제되었으나, 60년대 말부터 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날은 연방법인 聯邦消費者信用保護法(Feder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FCCPA)과, 州법인 統一消費者信用法(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등의 입법이 완비되어 있다. FCCPA와 UCCC의 양법은 소비자신용을 보호·규제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데 소비자신용 중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이들 법은 신용카드를 규제하는 중요한 근거법이 되고 있다. 회원규약에 회원의 발행자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의무 규정이 있고, 가맹점규약에 가맹점의 발행자에 대한 신용판매대금 청구규정이 있을 뿐, 회원과 가맹점간에는 그들 사이의 신용매매에 관한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다. 이러한 삼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학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信用狀去來說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이 설은 신용카드를 상업신용장의 일종으로서 신용장에 관한 법리를 유추 적용하려는 입장이다⁵⁷⁾.

상업신용장과 신용카드 모두 삼면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같으나,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3개의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서로 독립된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위반한 경우에도 관계서류만 정비되어 있으면, 발행인은 지급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발행인의 매도인에 대한 지급액을 모두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매도인에 대한 항변권이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데 비해, 신용카드는 회원의 지급의무는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즉 한 계약상의 채무가 다른 계약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거래에 신용장거래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된다⁵⁸⁾.

(2) 外上計定買受說 (factoring of accounts receivable)

오늘날 상사대리인(factor)은 제조업자나 상인의 외상채권의 구매 기타 신용채무를 행하는 회사로서, 매도인의 외상채권을 현금으로 매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추심하는 업무를 행하는 점에서 신용카드발행인이 매출전표(sales draft)를 양수하여 수금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에 착안하여 신용카드거래에 상사대리인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사대리인이 상인의 모든 채권을 매수하는데 대하여 카드발행인은 카드거래에 기한 것만을 매수하여, 상사대리인은 매수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57) Comment, "The Applicability o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to Modern Bank Card Systems", 18 Kentucky Law Rev., 1970, pp.871~890. ; 加藤良三, "クレジット・カード", 1977, 70面.

58) Jerry G. South, "Credit Card : A Primer", 23 Business Lawyer, 1968, p.329 ; 加藤良三, 註釋57)上掲論文, 70~72面.

없지만 카드발행인은 카드회원과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사대리인의 법리를 신용카드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의문이 있다⁵⁹⁾.

(3) 債權讓渡說 (assignment theory)

회원은 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고 가맹점은 이 채권을 발행인에 양도하는 것이라 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통상의 채권양도라고 해석하여, 회원이 발행인에게 지급하는 일정료를
이자가 아니라 서비스료로서 이자제한법 및 은행대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
원의 가맹점에 대한 항변이나 반소는 일반 채권양도에 따라 禁反言(estoppel)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양수인이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⁶⁰⁾.

그러나 이 설은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거래를 2차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매매 이전에 발행인과 회원 사이 및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두
개의 계약이 존재하는 카드거래의 실체를 무시한 이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
다⁶¹⁾.

(4) 直接債務說(direct obligation theory) 또는 直接貸付說(direct loan theory)

회원의 발행인에 대한 카드계약 자체에 기한 지급약속에 의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고 가맹점은 발행인의 지급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카드회원에 물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설(직접채무설)⁶²⁾, 또는 직접채무의 근거를
대부로 구성하는 설(직접대부설)⁶³⁾이다.

카드는 회원이 구매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매매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본질

59) Comment, "The Tripartite Credit Card Transaction : A Legal Infant", 48
California Law Rev., 1962, pp.459~460. ; 加藤良三, 註釋57)前掲論文, 72~75面.

60) Jerry G. South, Ibid.58), 1968, p.330. ; 加藤良三, 註釋57)前掲論文, 87~89面.

61) 加藤良三, 註釋57)前掲論文, 84面.

62) Clark & Sguillante, "The Law of Bank Deposits, Collections and Credit Cards", Revised
Edition New York, Warren, Gorham and Lamont Co., 1981, p.193. ; 澤野直紀, "クレジット・
カードのアメリカ法の發展(上)(下)", 金融法務事情(1014號), 44面.

63) Cleveland, "Bank Credit Cards : Issuers, Merchants and Users", 90Banking Law Rev.,
1973, pp.719~725. ; 澤野直紀, 註釋62)上掲論文, 45面.

평, 특히 소비자신용의 한 형태로서 소비자인 회원의 정당한 이익보호라 할 것이므로 근래의 연구는 획일적인 법리를 규명하기보다는 개개의 문제점들 속에서, 법기술적인 분류보다는 경제적인 효과에 따라 그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찾으려 하고 있다⁶⁶⁾.

2. 英國의 學說

영국에서는 신용카드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미국처럼 연구문헌이 많지도 않고, 신용카드계약(credit card agreement)의 법적 지위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1974년 제정된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CCA)에 의하여 소비자신용계약(consumer credit agreements)으로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⁶⁷⁾,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의 발급을 금한다(CCA 제5 조)⁶⁸⁾. 즉 카드 자체는 이의 발급을 원하는 자로부터 사전의 서면요청이 없이는 합법적으로 송부할 수 없는 신용증표(credit token)이다. 그러나 동 제51조는 기존합의나 계속된 합의의 갱신이나 대처에 의해 발행되는 증표(token)의 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1조 3항).

(1) 直接債務說

카드거래이론에 대해 Goode교수는 직접채무이론의 입장에 서서, 카드발행자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맹점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카드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⁶⁹⁾.

카드발행인의 이러한 청구권은 가맹점과 카드회원간의 계약과는 완전히 별개의 계약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카드회원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불만에 대해 가맹점에 대한 항변을 발행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카드회원은 계약

66) 澤野直紀, 註釋62)前掲論文, 45面; 加藤良三, 註釋57)前掲論文, 78~85面.

67) R. W. Goode, "Consumer Credit", United Kingdom Comparative Law Series, Vol 3, 1978, p.277.

68) Low & Woodroffe, "Consumer Law and Practice", Sweet & Maxwell, 1985, p.337.

69) R. W. Goode, "The Legal Regulation of Lending", in edited Aubrey L. Diamond, Installment Credit, 1970, p.44 & pp.56~57.

은 회원에게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 즉 발행인의 신용(지급계약)이고 회원의 카드제시에 의하여 이러한 신용을 공여받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계약에는 발행인과 회원 사이의 발행인의 회원에 대한 구매력(금전)의 대부와 회원의 발행인에 대한 구매대금(차용금)의 지급위탁의 2가지 계약이 체결되어 발행인의 회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금전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고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지급약속은 구매대금, 즉 차입금의 지급위탁에 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회원은 가맹점과의 분쟁을 이유로 발행인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가맹점은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는 때는 카드계약과는 별개로 회원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회원에게 구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이 인정되는 카드에 있어서 회원이 발행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이자로 해석되고 현금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설에 의하더라도 회원이 지급약속은 매매에 있어서의 하자과 관계 없이 지급의무가 아니라 매매의 완전한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지급약속이라고 보면 회원은 가맹점에 대한 항변을 발행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⁶⁴⁾.

(5) 小結

1968년의 統一消費者信用法(*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은 양당사자 카드거래는 발행인겸 매도인인 상인의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판매 또는 대부이고, 삼당사자 카드거래는 가맹점에 대한 관계에서는 현금판매로 취급되고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전의 대부로 취급하여 직접채무설 또는 직접대부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었다⁶⁵⁾.

카드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기존의 법리를 차용하지 않고 기존의 거래방법과는 독자적인 거래로 고찰하려는 직접채무설 또는 직접대부설이 보다 발전적인 해석이라고 여겨지나 중요한 것은 카드거래의 실질관계에 입각한 거래당사자간의 형

64) 加藤良三, 註釋57)前掲論文, 119~120面.

65) Jordan & Warren, "The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68 Columbia Law Rev., 1968, p.388. ; 加藤良三, 註釋57)前掲論文, 104~111面.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맹점에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카드회원은 가맹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카드발행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고 한다⁷⁰⁾.

그리고 카드발행자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이 있는 경우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카드발행자가 가맹점에 대한 책임은 카드발행자의 지급불능시에, Goode의 설에 의하면 카드회원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부보증 또는 손해배상에 기초하는 것이다. 또 가맹점이 카드회원에 의하여 제시된 카드를 신용하는 계약은 가맹점과 카드회원간에 있어서와 같이 조건부지급에 상당하고, 그 결과 가맹점의 카드회원에 대한 권리는 카드발행자에 의한 가맹점의 지급시기가 경과하기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2) 小結

이 Goode의 견해는 직접채무이론이라 하여도 그 바탕에는 카드발행자와 카드회원, 카드회원과 가맹점 및 가맹점과 카드발행자라는 삼당사자 각각의 사이에 개별독립의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카드발행자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회원의 채무의 보증에 의거한다고 한다. 이는 기술한 것처럼 오늘날 미국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상업신용장설과 같은 종류의 직접채무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영국의 消費者信用法(1974, *Consumer Credit Act, CCA*) 第14條 3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직접대부설과 비슷하게 되어 있다.

3. 西獨의 學說

(1) 두 가지 理論

서독에서도 신용카드의 거래(Kreditkartengeschäft) 즉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債權讓渡說과 支給指示說이 대표적이 이론이다⁷¹⁾. 서독의 지급지시설에 의하면 카드회원은 매출

70) R. W. Goode, Ibid.69), p.89.

71) Canaris, "Bankvertragsrecht", 2 Aufl., Rdn., 1981, S.833.

전표에 서명을 함으로써 카드사용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라는 지시를 카드발행자에 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支給人說과 상이하다.

또 하나의 이론인 채권양도설은 가맹점의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을 카드발행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카드발행자는 카드회원에게 그 양수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⁷²⁾.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독의 채권양도설은 미국이나 일본의 채권양도설과 유사하다.

(2) Eurocard와 Diners' Club의 差異

서독에서는 현재 주요한 신용카드로 Eurocard,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및 VISA카드의 4종류가 있으며, 카드발행자의 카드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내지 카드가맹점의 카드발행자에 대한 대금의 법적 근거는 일차적으로 각 가맹점규약(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für Vertragsunternehmen, AGBVU)에 의하여 설명된다⁷³⁾. 이에 따라 그 카드가 채권양도설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지급지시설에 의한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때 Eurocard 및 American Express카드의 경우는 가맹점이 카드발행자에 대해서 가지는 대금채권의 근거는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권리(BGB 433조 2항, 우리민법 568조 1항에 해당)에서 구하고, 카드발행자가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부담관계의 법적 구성에 있어서는 담보계약(Garantievertrtrg), 무인적채무약속(abstraktes Schuldversprechen, BGB 780조 참조), 채무공동인수(Schuldmitübernahme) 또는 보증계약(Bürgschaft)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발행자에 의한 채권의 매수만이 있다고 한다(債權讓渡說)⁷⁴⁾.

따라서 이때의 카드가맹점의 법적 지위는 無因的債務約束이나 擔保契約의 법리에 의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약하게 된다.

그런데 Diners' Club이나 VISA카드의 경우는 카드발행자가 가맹점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수표카드(Schekkarte)의 경우와 같이 담보

72) Canaris, a. a. O.71), S.833.

73) Peter Beck, "Einwendungen bei eurocheque und Kreditkarte", 38Bd (Köln ; Druck Verlagshaus Wieland), 1986, S.5.

74) Peter Beck, a. a. O.73), SS.10~11 & S.19.

계약(Garantievertrag)에서 구한다⁷⁵⁾. 이렇게 보는 이유는 카드발행자가 카드회원의 지급제시에 근거하여 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支給指示說).

4. 日本의 學說

(1) 序說

일본에서도 과거에는 하나의 카드규약만을 사용하여 카드거래 전체의 카드이용대금의 지급관계의 법적 성질을 고찰하여 債權讓渡說 또는 並存的債務引受說로 설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독의 경우와 같이 모든 카드규약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카드규약의 내용에 따라 채권양도형의 규약(債權讓渡說), 相當지급형의 규약(替當支給說) 또는 무명형의 규약(無名契約說)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하는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채권양도설, 相當지급설 및 무명계약설을 살펴본다⁷⁶⁾.

(2) 債權讓渡說

어느 규약에 의하면, 「會員은 加盟店이 會員에 대하여 가지는 賣出傳票의 額面金額에 該當하는 債權의 讓渡에 대하여 加盟店이 當社에 讓渡할 것을 事前に 承認한다」⁷⁷⁾고 되어 있다. 은행계카드를 중심으로 이러한 유형이 일본에는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데⁷⁸⁾, 구체적으로 대금채권의 양도는 전표의 송부로 이루어진다. 이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약간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규약상 가맹점은 채권양도가 그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특약이 없는 경우에 발행회사

75) Peter Beck, a. a. O.73), SS.17~19.

76) 清水 巖, “クレジット・カード取引の法構造”, 『法律時報』(46卷6號), 295~304面.

77) 日本 VISA會員規約 第4條 2項, Diners' 會員規約 第10條 1項.

78) 加藤 一郎・竹内昭夫編, “消費者保護法講座5” 收錄, 1985, 106面.

에는 양수의무가 주어지느냐 하는 점이다. 양수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발행회사는 임의로 채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판매업자만이 신용판매와 대금양도를 의무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공평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해석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양도에 수반하는 대항요건의 문제가 있다. 일본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日民 467條 12項, 韓民 450條 12項)인데, 이것은 현존하고 또한 특정한 채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회원이 장래의 모든 가맹업자로부터 구입하게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에 무한정하고도 포괄적으로 승낙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대항요건으로서의 유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승낙을 유효로 보는 유력한 주장도 있으나 결국 사법일반에 있어서의 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카드보유자의 항변의 대항문제가 있는데 1984년 할부판매법 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범위에서는 대체로 해결을 보았다.

(3) 替當支給說

채당지급 유형의 규약은, 「당사는 회원이 카드이용에 의하여 구입한 상품의 현금판매가로부터 계약금을 공제한 액(이용대금이라 함)을 회원에 갈음하여 가맹점에 채당지급하고 그것을 회원에게 구상한다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다.」는 형식을 취한다. 「채당지급」이라 함은 원채무자인 회원이 판매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발행회사도 원용할 수 있어야 한다⁷⁹⁾. 채당지급유형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뉘어진다.

① 保證說

이 입장을 취한 하급심판례에 의하면, 「발행자는 회원의 의뢰에 의하여 가맹점과 소위 가맹점계약에 의하여 회원의 장래채무에 관해서 가맹점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⁸⁰⁾하다고 하고 있다. 즉 회원이 피보증인이며 발행회사

79) 澤野直紀, 註釋62)前掲論文, 106~107面.

80) 神戶地裁社支判, 判例時報 46卷 6號(1976. 9. 8), 113面.

가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보증이라고 할 때 주된 채무가 유효한 한 보증채무가 아니면 최고의 항변에 복종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카드거래의 실무에서는 판매업자가 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카드발행회사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채당지급을 보증이라고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실태와는 거리가 멀다.

② 債務引受說

이것은 카드보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발행회사가 판매업자에 대하여 채무인수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학설이다. 그 경우 채무인수는 중첩적인가 면책적인가의 문제가 있다. 만약 전자인 경우에는 판매업자는 본래 발행회사와 보유자 쌍방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특약으로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의 우선행사를 의무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거래실태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대로 후자인 경우 채무인수 이후 판매업자는 카드보유자에 대한 권리를 잃은 결과가 되고 이는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된다⁸¹⁾.

③ 履行引受說

이것은 카드발행회사가 카드보유자와 이행인수계약에 기하여 보유자의 대금채무를 제3자의 입장에서 판매업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설의 난점으로서 이행인수에 의해서는 통상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판매업자측에서 발행자에게 대금회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⁸²⁾.

④ 消費貸借說

이 설에서는 발행회사가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보유자와 판매업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아주 명쾌한 파악이기는 하나 양 계약을 나누는 결과 보유자, 판매업자간에 생긴 항변을 발행회사가 대항하는 것은 이론상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81) 清水 巖, 註釋76)前掲論文, 300面.

82) 清水 巖, 註釋76)前掲論文, 300面.

(4) 無名契約說

채권양도도 아니고 채당지급도 아닌 무명형 또는 무명계약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무난한 접근방법이지만 유력한 신중론도 있다⁸³⁾. 이 설은 신용이용에 따른 대금지급관계에 대하여 그 법적 성질을 나타내는 문언은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신용카드거래의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규약에 의해서도 대금지급관계의 법적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설의 결론은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삼당사자간에 지급되는 과정은 채권양도설과 채당지급설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무명계약설에 의하면 당사자는 자유로이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카드회원은 카드발행인과의 회원규약에 의하여 카드발행인에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카드발행인은 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규약에 의하여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카드회원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카드회원은 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회원규약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설의 문제점은 당사자가 카드규약에 그 법적 성질을 나타내는 문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무명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또 이러한 부류의 카드회원 규약상 대금지급에 관한 규정은 아주 간단하고 불명확한 점이 많아 무명계약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점등이다.

5. 韓國의 學說概觀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관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거의 일치하여 일본의 학설인 채당지급설 중 並存的債務引受說을 따르고 있다⁸⁴⁾. 따라서 카드회원과 카드가맹점사이에 매매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채무관계

83) 清水 巖, 註釋76)前掲論文, 197面.

84) 조용호, “크레디트카드의 법률문제”, 「사법논집」(제17권), 1986. 12, 166쪽.

는 그대로 존재하고 카드발행인이 카드회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며, 다만 카드가맹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회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⁸⁵⁾.

그런데 카드회원은 카드발행인에게 원인행위에 기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 (1) 이에 대하여 카드회원규약상의 항변절단규정은 약관해석일반론, 신의칙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고, 따라서 카드회원은 카드발행인에 대하여 원인행위에 기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⁸⁶⁾.
- (2) 한편 카드회원 규약의 항변절단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922호) 제6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에 해당할 정도면 무효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발행인이 카드회원은 카드발행인에게 항변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⁸⁷⁾.

따라서 위와 같은 카드가맹점규약에 반하는 카드회원규약상의 항변절단규정은 그 범위에서 그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해석한다.



II. 私見

우리나라에서 현행 사용되고 있는 회원규약의 대부분은 가맹점과의 분쟁을 이유로 카드발행인에게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처럼 割賦販賣法과 같은 입법적 조치가 따르지도

85) 조용호, 앞 주84)전계논문, 166쪽.

86) 김문환, “크레디트카드의 실태와 문제점”, 「상법학의 현대적 과제」(단야 서정갑박사 고회기념논문집), 삼영사, 1986. 53~55쪽.

87) 김영성,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법적 고안”,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1988. 2쪽.

않고 있다. 단지 “約款規制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동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할 정도이면 그 약관은 무효가 되나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회원규약과는 달리 가맹점규약에는 가맹점이 회원으로부터 신용 판매한 상품의 교환 또는 반품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할 때에는 취소전표에 서명을 받아 처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⁸⁾. 또 취소전표가 있는 경우 그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차회의 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⁹⁾. 이러한 규정들은 카드발행인이 회원으로부터의 항변을 고려해서 둔 규정으로 카드회사가 회원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88) 국민카드가맹점규약 제4조 5항, BC카드가맹점규약 제4조 5항, VISA카드 가맹점규약 제2조 제4항, 삼성카드가맹점규약 제5조 4항, 신세계카드가맹점규약 제4조 제5항.

89) 국민카드가맹점규약 제11조, BC카드 가맹점규약 제12조, 신세계카드가맹점규약 제4조 제6항, 제4조 제6항.

第 3 章 신용카드去來上の 責任分擔에 관한 法律問題

第 1 節 不正使用의 損失負擔에 관한 法理論

I. 序說

신용카드 거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삼당사자가 간에 체결되는 삼면계약에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의 상충관계로 인해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법률문제에 따라 손실부담을 삼당사자 가운데 누구에게 지으느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신용카드의 분쟁 중 不正使用¹⁾으로 인한 피해가 85%이상이 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손실을 누구에게 책임지우는가이다. 대체로 회원규약이나 가맹점규약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전부를 카드회원 또는 가맹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부담시키고 카드발행인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손실부담을 누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각국은 입법이나 판결로 카드회원의 책임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카드거래에 있어서 원인행위에 대한 무효, 취소의 사유가 있거나 목적

1) 부정사용이란, '신용카드가 도난·분실되는 등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되는 것' 을 뜻한다. ; 한삼인, 「판례민법」, 법률행정연구원, 409쪽 참조.

물의 하자 등 이행상의 하자가 있어 카드회원에게 항변권이 발생한다. 대금지급 거절의 항변권 행사는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직접당사자가 아닌 카드발행회사를 상대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덧붙여 연대보증인의 책임과 그 제한에 대한 법률관계도 살펴보겠다.

이에 대하여 민사적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부정사용의 유형부터 살펴보자.

II. 不正使用의 類型과 責任關係

신용카드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도난·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취득하여 이를 불법하게 사용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액수도 대규모화되고 있다.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용카드 거래의 역사가 짧아 구체적인 유형으로 구분·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단 부정사용의 형태를 ①회원 이외의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 ②카드회원 본인에 의한 부정사용, ③가맹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가 있다.

부정사용에 대한 손실부담에 대한 민사적 내용은 본 第3章 “第2節 카드 도난·분실시 부정사용책임의 문제”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하에서는 부정사용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관계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他人에 의한 不正使用

진정하게 성립된 카드를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회원 이외의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는 카드거래의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성의 문제이고, 회원본인에 의한 부정사용은 카드거래의 이용자의 질적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카드회원으로부터 차용·담보·양도받아 이용하는 경우,

카드를 절취한 행위는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며 사용으로 인한 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제231조),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형법 제234조), 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로 속여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²⁾. 하지만 특별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규정에 적용되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오직 신용카드의 절취행위만 형법상의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카드회원으로부터 차용·담보·양도받아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횡령죄(형법 제355조)에 해당하나 특별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되며 양도, 양수는 쌍벌죄에 해당하여 양수인, 양도인 모두 처벌받게 된다.

(3) 신용카드를 제3자가 부정사용하는 것을 회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³⁾,

(4)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전화 또는 FAX로 신용구매하는 경우,

행위자인 제3자가 진정한 회원인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

(5) 또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발급된 신용카드를 회원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는 등의 행위는 신용카드업자와 회원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는 약관규정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5조). 그러나 카드회원이 카드발행은행에 예금통장이 있고 카드결제가 그 통장에서 자동전

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8. 22 선고, 84고단 1988호 판결.

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673호 판결.

산결제로 하는 경우에 위 은행은 위 회원에 대하여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질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면에서는 사실상 카드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설정자인 신용카드 회원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질권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매출전표에 따른 문제도 함께 살펴보자.

우선 카드소지자들이 액수가 한정된 현금서비스보다는 불법대출업자를 찾아가 가짜 매출전표를 받고 현금을 대출 받는 사례가 있다. 이들 불법사채업자들은 카드 회원을 상대로 엄청난 선이자를 징수하면서 광고나 전단으로 서민들을 현혹하면서, 매상을 은닉하여 탈세를 하고 있고, 기업화된 사채업자의 경우 카드 대출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여 카드회원연체금의 대납까지 해주면서 카드사용을 부추이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동법 제19조 제4항 1호 내지 4호). 또한 가맹점들이 수수료경감 등을 위하여 매출전표를 불법 유통시키는 속칭 “매출전표돌리기” 등 매출전표조작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⁴⁾. 그리고 자금 유통을 해준 자 또는 중개, 알선한 자가 카드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수렴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2. 카드會員 本人에 의한 不正使用

(1) 무효인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예: 거래기간 초과 후의 이용, 거래가 금지된 후의 이용이 이에 해당된다),

(2) 본인이 카드 도난·분실계를 카드회사에 제출한 후에 다시 그 카드를

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호 판결.

부정 이용하는 경우,

(3) 유효한 카드를 부정 이용하는 경우(예: 카드회원 자신에게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거래에 의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⁵⁾,

(4) 카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카드자체를 처분함으로써 부정 이용하는 경우(예: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담보제공·양도하는 경우)⁶⁾,

(5) 카드를 부정 발급받은 경우,

부정발급 받은 행위와 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사기죄(형법 347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부정발급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⁷⁾.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카드를 회원이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용하였다면 이것이 사기죄에 문의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1) 學說⁸⁾

이에 관련하여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이 나뉘어진다.

- 5)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 10. 15. 선고, 82고단 4357호 판결(법률신문 1610호, 1985. 10. 28);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 2466호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08호 파기 환송.
- 6) 회원이 카드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입질, 양도하는 것은 회원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다(국민카드 회원규약 제2조1항, BC카드 회원규약 제2조2항 등).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담보로 제공받은 자가 이것을 사용한 경우 회원은 카드 이용법위반이라고 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용자도,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면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7)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호 판결.
- 8) 송명선,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법적 연구 : 회원보호의 관점에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대학원, 1991, 52~54쪽.

① 否定說

신용카드는 그 회원의 지급능력 있음을 전제로 발급되어 진정한 카드를 제시한 회원에게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며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에게 그 대금의 결제를 거절할 수 없는 가맹점약관이 정하여져 있다. 또한 가맹점은 제시된 카드의 유효성과 카드의 제시자가 회원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지 그 회원의 지급의사나 능력은 거래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이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상황에서, 가맹점으로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회원은 기망행위가 없고 가맹점도 착오나 재산적 손해가 없다. 그리고 회원의 대금지급능력·의사·기망 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망·착오·처분행위간에는 원인관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

② 肯定說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들 중에서도 피기망자와 피해자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다시 설이 나뉘어지고 있다.

a. 신용카드업자가 피기망자·처분행위자·피해자라는 견해

회원이 매출표에 서명을 하여 교부하는 것이 기망행위이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에게 해당지급(계좌이체)을 하게 되는데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송부받은 매출표의 대금은 후일 회원으로부터 지급 받을 것이라고 기망 당한 것이며, 이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표의 송부가 있는 이상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대금지급의 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금의 해당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b. 가맹점이 피기망자·처분행위자·피해자라는 견해

신용카드거래라고 하지만 상품을 구매한 회원은 가맹점에게 대금채무를 부담

한 것이 되고, 가맹점으로서 상품을 신용거래에 기하여 무자력자에게 교부하므로써 생기는 손해를 나중에 신용카드업자가 전보해주는 것일 따름이지 가맹점에 생기는 재산적 이익의 침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에 대해 채당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채당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태는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은 채당지급을 받는 것으로서 바로 영업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이상 가맹점이 재산적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c. 신용카드업자가 피해자이고 가맹점은 피기망자·처분행위자라는 견해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일치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피해자이어야 할 것은 없고, 가맹점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출표의 송부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금의 채당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회원이 가맹점을 기망하여 채당지급을 하게 한 때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2) 學說의 檢討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재물의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므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 347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를 사용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① 客觀的 構成要件

a. 기망행위

기망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 라고 한다⁹⁾.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작위·부작위·명시·묵시를 막론하고 가능하다. 계약당사자사이에 이미 오랜 기간동안 거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 계약에 의한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하는 것이 독일의 다수설이다¹⁰⁾. 당좌계정거래에서도 계정금액정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고지의무가 인정되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b. 처분행위

처분행위자는 기망행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산상의 피해자와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피기망자)을 착오에 빠뜨려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은 것이고¹¹⁾, 이 때 가맹점은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망·착오·처분·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법원은 판시한다¹²⁾.

c. 재산상의 손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형법 제347조는 독일형법 제263조와는 달리 재산상의 손해를 요구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도 일괄하여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¹³⁾. 소수설도 그것이 재산의 위험만으로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¹⁴⁾.

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호 판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호 판결.

10) Hermann Blei, Strafrecht II, "Besonderer Teil", 11 Aufl., München, C. H. Beck, 1978, S.197.

1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호 판결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호 판결.

1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호 판결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호 판결.

1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호 판결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40호 판결.

1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89, 349쪽.

② 主觀的 構成要件

행위자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물건을 납품 받거나, 변제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한 때에는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¹⁵⁾. 고의와 함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¹⁶⁾. 이익을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그 이득은 객관적으로 위법한 불법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여 본 바, 지불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를 사용한 회원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加盟店에 의한 不正使用의 경우

- (1) 가맹점 자체가 가공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카드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 (2) 고객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매출전표에 서명을 받으면서 백지매출전표에 함께 서명을 받은 후에 금전을 임의로 기입하여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Ⅲ. 不正使用의 現況

1. 國內의 경우

< 표Ⅲ-1 >에서처럼 피해상황을 분실·도난(우송중 망실 포함), 카드(혹은 매출전표)위조·변조로 나뉘어 보면 1995년도의 경우, 도난·분실카드에 의한 피해액이 257억원으로 가장 크고 위조·변조에 의한 피해액이 25억원(매출전표 21억원, 카드4억원), 합계 피해액 282억원이다. 이것은 1993년의 피해액인 140억원의 두배이다.

1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호 판결.

1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57호 판결.

< 표Ⅲ-1 > 신용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1990~1995)

(단위: 건, 억원)

연도	분실·도난 (우송중 망실 제외)		위조·변조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0	10,240 (9,267)	70.9 (57.9)	1,880	17.3	12,120	88.2
1991	16,384 (15,429)	106.5 (95.0)	2,796	14.0	19,180	120.5
1992	18,837 (18,035)	115.1 (106.7)	2,424	9.6	21,261	124.7
1993	n.a.	136.0	n.a.	4.0	n.a.	140.0
1994	n.a.	170.0	n.a.	9.0	n.a.	179.0
1995	n.a.	257.0	n.a.	25.0	n.a.	282.0

***자료)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주) 신용카드사 부담기준

2. 外國의 경우

(1) 美國

美國의 경우 사기 등 불법사용에 의한 피해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보다 그 절대수준이 높다. 1995년의 사기에 의한 피해액을 보면 비자사가 4억 2,300만달러로 총매출액 3,402억달러의 0.124%, 마스타카드사가 4억5천만 달러와 1,980억달러로 0.227%를 보여 마스타카드사가 비자사보다 83%만큼 높다. 비자와 마스타카드의 양사의 미국내 피해액은 8억 7,300만달러로 매년 조금씩 늘어 오고 있지만 이용금액 대비 비율로 보면 조금씩 낮아져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감소는 카드사들의 노력의 대가이다. 그 동안 카드사는 갑자기 이용액이 증가하는 카드를 점검하고 위조·변조 카드를 가려내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해 왔다. 또 1990년 초반 극성을 부려 카드사를 위협했던 '부착카드 부정사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카드사, 우체국, 경찰당국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으로부터 도난·분실 신고가 제출되고 동 사안에 대해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규약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또 회원에게 대금채권을 행사할 때

이에 대해 회원이 자신의 사용분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해 오면 조사 후 위조 카드 사용 등으로 판명될 경우 피해액을 보상한다. 이때 가맹점은 신용판매한도액(floor limit)의 초과나 미달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도난·분실에 대비하여 카드발행사는 일반적으로 카드발행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또 회원이 피보험자일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므로 한도액을 상한으로 경제적으로 입은 실질적 피해를 보상받는다. 한편 위조의 경우 비자, 마스타 등 국제브랜드카드에 대해선 일정금액을 넘는 손해는 비자인터내셔널, 마스타인터내셔널이 보험에 의해 보상해 주고 있다.

(2) 日本

日本の 15대 손해보험사가 카드 도난(위조·변조는 보험대상이 되지 않음)과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의 보험금이 33억 엔(100)¹⁷⁾으로 1990년 56.8억엔(172), 1991년 79.3억엔(240), 1992년 112.3억엔(340), 1993년 127.5억엔(386)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금 지급액의 증가로 인해 1995년 7월에는 기본보험료가 약 60%인상되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험금의 경우 지급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지불보험금액이 곧 바로 부정사용 피해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3. 國際比較

첫째, 피해율은 일본이 가장 높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피해율은 1992년에 최고수준에 달한 이후 CAT(Card Authorization Terminal)형 단말기의 보급을 수반한 거래승인 제도의 도입 등의 대응조치로 피해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

둘째, 우리나라는 부정사용이 크게 늘어, 피해액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비자는 카드 검증치(Card verification Value), 마스타가드는

17) ()은 1989년을 100으로 했을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낸다.

카드확인코드(Card validation Code)와 같은 새로운 검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입 전에 비해 카드 위조에 따른 피해액을 70%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도난·분실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사는 카드 활동프로그램과 혼합수송 방법을 채택해 부착카드를 이용한 부정사용을 28%(1994년)정도 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우리의 부정사용은 도난·분실 카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마스타카드, 비자 등은 대부분 위조카드에 의한 부정사용이다.

넷째 가맹점에 의한 불법행위가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에 있어 다른 패턴을 보여 준다. 우리의 경우 사채업자나 탈세를 의도하는 사업자들이 무능력자 등의 타인명의로 위장·변조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부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위장가맹점을 통한 통신판매 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별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율의 변화 양상이 다르다. 비자와 마스타카드에 한정할 경우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체에서 피해율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일본지역에서 크게 늘어났다.

4. 우리나라의 낮은 被害率의 原因

우리나라의 피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엄격한 승인제도의 확립이다. 이는 카드회사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복수 카드 소지자의 증가로 카드 관리가 허술해지고 이에 따라 분실·도난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습득한 제3자에 의한 부정카드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승인제도라 함은 가맹점, 은행창구 또는 현금자동지급기(ATM : Automated Teller Machine)에서 현금요청을 받을 때 신용카드조회기(CAT : Card Authorization Terminal)나 CD기로 매거래시마다 거래승인기관으로부터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로 1992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신용카드조회기 사용할 때 버튼조작 방식인 KEY-IN, ARS방식, 또는 거래승인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승인을 얻는 방법들이 있으나 이들 방법들은 조작이 가능하여 부정사용에 이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통과방식(SWIPE)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래내역은 한국신용카드업협회에 구축된 “카드사간 가맹점 전산망”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전거래 사전승인제도는 주요국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승인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율이 낮은 것은 사용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신용사회 질서확립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신용카드사들이 1회 사용한도(Floor Limit)를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카드 사용자별 등급에 따른 1인 월간 사용한도액의 설정이다. 이는 사전승인 제도로 부정사용을 막지 못할 경우가 생기므로 이 때 발생하는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2단계 조치이다.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해도 일정 한도액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가령 할부 사용한도액, 일시불 사용한도액, 현금서비스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물론 국내에 진출한 일부 외국계 카드의 경우 사용 한도액이 없는 경우(VISA)가 있다.

셋째, 카드사의 보상기간이 분실·도난 신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지난 15일간의 거래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회원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카드사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보상분을 줄이고 회원에게 귀책에 따른 일정 수준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카드사의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카드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신고된 피해 발생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조사나 중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카드사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비율이 8할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곧 회원과 가맹점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액을 부담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넷째, 가맹점이 서명 확인 등을 통해 카드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이 책임을 해태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약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맹점이 피해액을 부담하는 것은 위장 매출전표, 변조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카드 이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카드가 많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기 전에 카드를 되돌려 주는 사례가 일반화된 상태에서 동 약관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

다섯째, 우리는 범죄조직에 의한 카드 위조·변조가 거의 없어 이에 따른 부정사용 금액이 아주 작다. 위조·변조에 따른 피해액의 대부분은 카드의 위조·변조보다 매출전표의 위조·변조에 의한 것이다.

IV. 不正使用에 따른 損失負擔의 原則

1. 過失責任主義—原則

위에서는 카드부정사용의 제유형을 살펴보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의 도난·분실의 경우 타인이 부정사용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부정사용자가 카드의 이용대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카드회사·카드회원·가맹점 가운데 누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시에 그로 인한 손실을 카드발행인·카드회원·가맹점 가운데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를 결정하기는 매우 힘들다. 여기서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사법상의 일반원칙인 과실책임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¹⁸⁾.

우선 먼저 카드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가맹점이 카드에 의한 신용판매를 할 때 카드의 이용자와 카드회원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분담에 관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제시된 카드가 도난·분실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신고를 카드발행인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와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누구든지 쉽게 확연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대조를 태만히 한 경우 등에는 가맹점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카드회원은 세심한 주의로써 카드를 보관하여 도난·분실에 의한 손실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고 또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속하게 카드발행인에게 신고함으로써 손실의 증대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이 카드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카드의 부정사용

18) 한삼인, 앞 주1)전게서, 409쪽.

에 의한 소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카드발행인이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신고를 받아 경우에 카드발행인은 이를 신속하게 가맹점에 통고하여 카드의 부정사용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인 이러한 통고를 신속히 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발행인이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카드會員責任負擔主義와 發行人責任負擔主義

(1) 카드會員責任負擔主義

회원책임부담주의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들이 카드를 취득하는데 비용을 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발행인 책임주의는 카드를 바로 받아줄 수 없게 하고 신원확인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회원과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를 회원가입을 꺼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발행인과 상인이 동일인인 경우 발행인 책임주의는 카드의 유용성을 개인수표보다 나을게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수표는 위조위험보다 수표발행인의 신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신용카드는 신용위험이 적은 경우가 아니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 수표(T/C)와 마찬가지로 상인이 위조위험을 부담하지만 유통되는 것이다.

(2) 發行人責任負擔主義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카드발행인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그 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드발행인은 카드 손실의 비용, 제도, 원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최적의 위치에 있다. 또한 카드발행인은 카드 손실의 발생을 통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즉, 카드발행인은 카드를 인수하는 가맹점과 카드를

이용할 회원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의 분배, 이용자의 동일성, 그리고 분실신고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진, 부호장치, 음성식별장치와 같은 안전장치(security system)를 고안할 수 있다¹⁹⁾.

둘째, 카드발행인은 신용카드 사업을 운영하여 수수료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발적인 손실을 부담하여 이를 수수료 규정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손실을 다수자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되므로 특정한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계된 가맹점이나 카드회원이 전 손실을 부담하는 것보다 낫다²⁰⁾.

물론 카드회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제도하에서는 그들끼리 보험제도를 마련해서 손실을 분산시킬 수도 있으나 카드당 보험제도의 비용은 손실을 분산시키는 제도하에서 드는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다²¹⁾.

3. 損失負擔의 基準

(1) 損失極小化(Loss minimization)

회원은 주기적으로 카드를 점검하고 분실통지용 우편카드를 지참하는 등 부정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카드자체의 변혁에 비하여 훨씬 효과가 적다.

반면에, 카드발행인은 사진이나 암호 등을 카드에 결합시키는 등 예방조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다.

(2) 危險分散(Spreading)

카드 사업자는 일부 극소회원에 의하여 부정사용된 손해의 부담을 전 회원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가입비, 연회비 또는 수수료 등으로

19) John. C. Weistart, "Consumer Protection in the credit card Industry Federal Controls", Vol. 70, Michigan Law Rev., 1972. p.1510.

20) 清水 巖, "クレジット・カード取引の法構造", 「法律時報」(46卷6號), 57面.

21) John. C. Weistart, Ibid.19), pp.1510~1511.

얼마든지 실을 분산시키고 손실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3) 運營費用(Administrative costs)

위험분산을 위하여, 회원이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보다 발행인이 보험자(insurer)가 되어 보험료를 정기적인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이 훨씬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상업보험이 이를 취급할 경우 발행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정하므로 오차에 대비하여야 하고 보험입안, 판매, 청구취급에 운용비가 들어 높게 매기게 되나 발행인 자신이 보험자가 되면 이러한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4) 信賴性(Reliance)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록이나 행위 또는 의사표시로서 신뢰를 준 자는 후일에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며, 특히 신용카드 회원이 일정한 신뢰를 부여한 행위와 의사표시는 카드거래의 대금지급 채무를 회원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 예로 이미 신용카드는 분실, 도난된 상태에서 카드사업자로부터 이용대금 청구서를 받고서도 부정사용에 따른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후일에 부정사용을 주장하는 경우로 이때는 명확한 회원의 부담이다.

(5) 公平性(Impartiality)

도난·분실된 신용카드가 엉뚱한 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신용카드 회원 또는 카드사업자가 부담할 때 죄없는 카드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형식이 되어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신용카드 회원과 카드사업자는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사용하는데 상당한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부정사용토록 한다거나 부정사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第 2 節 카드 盜難 · 紛失時 不正使用責任의 問題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를 놓고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비교적 많은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없고 하급심에서는 카드회원의 책임이 언제까지 존속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a) 카드회원이 카드를 카드발행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책임을 진다는 무한책임방식²²⁾.
- (b) 카드발행인에게 도난·분실을 신고한 후 일정기간(3일)까지 책임을 진다는 방식²³⁾.
- (c) 신고전에는 회원이 책임을 지지만 신고후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방식²⁴⁾.
- (d) 신고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신고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한 책임도 일정한 액수로 제한하는 방식²⁵⁾.

하급심에서의 이러한 여러 갈래의 판결은 아래의 대법원 1986. 3. 11선고, 85다카1490호 판결²⁶⁾을 시작으로 연이어 나온 대법원의 판결로써 해결을 보게 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드의 도난·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카드 거래약관 자체는 유효하나, 그 도난·분실 후 회원이 지체없이 발행회사에 소정 양식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신고와 통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
- 22)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7. 7. 11. 선고, 83가소3603호 판결 ; 서울고법 1985. 2. 28. 선고 84나2165호 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0. 5. 선고, 84가소 5125호 판결.
 - 23) 춘천지법 1985. 2. 6. 선고, 84나174호 판결.
 - 24) 카드 도난·분실사실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 후의 카드회원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서울민사지법 1984. 3. 26. 84가소1850호 판결 ; 서울민사지법 1984. 11. 26. 84가단1569호 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10. 8. 선고, 85나55호 판결).
 - 25) 춘천지법강릉지원 1984. 7. 4. 선고, 83가단350호 판결 ; 서울민사지법 1985. 8. 26. 선고, 85가소14134호 판결 ; 서울민사지법 1985. 12. 11. 선고, 84나2737호 판결).
 - 26) 판례월보 188호, 1986년 5월 100면 ; 법원공보 775호(1986년 5월 1일자 39면) ; 법률신문 1631호(1986년 4월 14일), 8면.

도 가맹점이 사진·서명이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하는 등 발행회사나 가맹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회원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²⁷⁾.

이 판결은 회원이 카드 분실 등에 무한책임부담을 규정한 구약관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의가 상당하다.

그 뒤 1987년에 제정된 舊,신용카드업법 제12조는 “신용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 카드의 도난·분실의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 후의 그 신용 카드 사용에 대하여는 신용 카드업자가, 통지 전에는 회원이 책임을 지는 소위 ‘신고 전책임 조항(liability until notice clause)’을 명문화하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도 제1항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라고 밝히고 있다.

I. 會員의 損失負擔

1. 事故申告前의 損失負擔

구, 신용카드업과 회원규약은 사고 신고일을 기준하여 사고신고전에 발생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의 부정사용분은 카드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 12월 개정된 신용카드 약관에는 “일정 절차를 이행한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 부터 15일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²⁸⁾. 다만 카드 1매

27)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 1490호 판결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다카 739호 판결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다카551호 판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타2273호 판결.

당 최고 2만원까지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인회원규약 제1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신고 접수일 이전의 부정사용의 보상책임을 제한한 회원규약을 대법원 판례는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손실부담의 기준일 선정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判例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① 신고 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② 신고 접수한 날의 전날로부터 15일 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백만원의 범위내에서만 카드회사가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전액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③ 타인이 부정사용한 금액 중 월간 사용한도액 범위내에서만 회원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²⁹⁾.

회원이 신고전 책임을 부담하는 이론적 근거는 회원규약상 회원의 카드이용 관리의무와 사고신고의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카드의 관리와 관련하여 카드회원이 카드를 도난·분실 당한 것 자체가 회원의 과실은 아니라고 하여 회원을 보호하는 견해³⁰⁾와 이와 반대로 카드회원의 보관책임을 인정하면서 카드는 항상 휴대하는 것으로서 「휴대한 현금」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통지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일상 휴대하는 현금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견해³¹⁾가 대립하고 있다.

2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호 판결.

2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호 판결.

30) 정동윤, “신용카드의 무단사용시 손실부담자”, 「사법행정」, 1984. 11, 34쪽.

31) 김문환, “크레디트카드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1989, 266쪽.

생각컨대 신용카드는 현금자체는 아니지만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현금을 도난·분실한 것 이상으로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관리상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카드회원의 손실부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설령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사고를 즉시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타인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월간사용금액 초과금액까지 손실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견해가 있다³²⁾.

(2) 기타 會員이 責任을 져야 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맡겨 둔 경우에는, 도난·분실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카드를 소지한 자가 언제든지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할 것인바, 예컨대, 갑이 신용카드의 발행을 을에게 위임하여 카드회원가입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을이 교부 받은 신용카드에 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을의 말만 듣고 그대로 을에게 카드를 맡겨 두었다가 은행으로부터 을이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카드를 회수하거나, 은행 또는 가맹점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갑은 을의 위 카드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은 위 회원가입 규약에 따라 을의 위 카드거래로 인한 대금지급의무를 진다³³⁾.

그러나 위의 대법원 판결은 카드회원 명의의 카드를 타인이 사용한 것을 마치 “카드회원인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정사용까지 책임지기로 한 경우”로 본듯하며, 그러므로 여기에까지 카드거래에 따른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나친 대법원의 해석이라는 주장도 있다³⁴⁾.

한편 카드회원의 카드관리 소홀로 카드비밀번호가 누설되어 이로 인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도 카드회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회원규약 제8조 제5항).

32) 김문환, “카드약관 정비로 부정사용 막아야”, 『금융』, 전국은행연합회, 1990. 4, 16쪽.

3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73호 판결 ; 법원공보 801호, 1987. 7, 83면 및 판례월보 제 202호, 1987. 7, 83면.

34) 김문환, “타인의 크레디트카드 사용에 대한 묵인”, 『민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7쪽.

또 카드뒷면의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도난을 당한 후 습득자가 그 카드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카드회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회원규약 제5조 1항, 4항).

2. 事故申告後の 損失負擔

사고신고 후 손실부담에 관하여, 위험분산이나 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 카드회사부담주의가 타당하다는 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약관 등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하여 카드회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예외규정 6가지를 두고 있다³⁵⁾. 다만 이런 예외규정들이 공평성의 원칙에 합치하는가에 대해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例外規定

① 會員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不正使用의 경우

카드회원이 허위로 도난·분실 신고를 하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카드를 계속 사용하게 한 경우는 보호해줄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고신고 후라도 당연히 카드회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칫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 아닐 수 없다³⁶⁾.

② 카드의 貸與·讓渡·擔保提供·不法貸出 등으로 인한 不正使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는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0조 제3항 제1호)고 규정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양도, 양수, 질권설정이 금지되는 것은 신용카드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며 금반언의 원칙에

35) 비씨카드 회원약관 제16조 3항 : 국민카드 회원약관 제10조 제4항.

36) 정동윤, “신용카드의 도난과 분실”, 「상사법연구」(제6집), 한국상사법학회, 1988, p.25.

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고신고전후를 불문하고 카드회원의 책임을
저야 한다.

③ 會員의 家族, 同居人(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不正使用 또는 이
가 관련하여 생긴 不正使用의 경우

카드회사의 관행 중에 하나로 회원의 가족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
어 남편의 카드를 아내가 사용하는 경우) 사용단계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정작 도난이나 분실을 했을 때 사고 책임은 당사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가족 또는 동거인 상호간의 손실은 카드회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상 가족공동체 상호간의 묵인 하에 자기계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
난·분실시에는 묵인여부에 대한 진실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회원부담의 규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카드회사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된다. 사용단계에서 본인 이
외에는 사용 못하게 하든가, 카드사가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본인의 책임으로
위험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해서 예방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매출이 있
으면 카드사에게는 좋은 일이고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런
취지의 고지를 태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력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 회원입장에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
이 보편적이므로 아예 본인의 승인하에 가족회원으로 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라
면(개정개인회원약관 제1조) 아예 “가족, 동거인”의 개념을 문헌상의 한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친척 또는 인척으로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사람과 그
동거인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좀더 실효가 있을 것이다.

④ 天災地變, 戰爭, 內亂, 風水害 기타 비슷한 變亂으로 인한 秩序紊亂 중
에 카드를 紛失·盜難 당하여 생긴 不正使用의 경우

위기상황에서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부정사용을 관리하기란 매우 힘
든 상황이고, 집단적·대량적 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카드회사가 부담할 수 없

다는 약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상황이라고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위험분산의 수단을 카드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1호)에 의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면책조항에 해당되어 효력이 의문시된다.

⑤ 不正使用의 被害調査를 위하여 카드會社가 정한 調査에 協助하지 아니한 경우

사고조사는 카드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카드의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카드회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카드회사가 그 손실부담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⑥ 카드에 署名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紛失·盜難 당하여 생긴 不正使用의 경우

카드회원은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되지 않도록 “회원은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비씨카드 회원약관 §3 ① : 국민카드 회원약관 §3 ①)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용, 관리하여야 한다(비씨카드 회원약관 §3 ③)고 규정하고 있다.

서명이 누락된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상태에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회원의 선량한 관리의무 소홀로 손실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자로 보아 회원의 책임으로 하고, 다만 사고 신고일 전 15일부터 그 이후 손실은 카드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본인 책임이고, 서명한 것을 훔친 사람이 부정사용했을 경우에는 가맹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들은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다.

더구나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난·분실 등을 신고한 이후에 부정사용에 대하여도 카드회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 사고신고를 받은 이상은 카드사도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폐해가 확장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서명하지 않으면 본인부담이라고 하는 약관내용은 사고신고 접수일 이전 15일분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카드회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본다. 끝으로 신용카드 회원이 비밀번호를 누설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나 절취한 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손해는 카드회원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3. 信義則에 따른 會員의 損失負擔義務의 制限

사고신고전이라고 해도 카드회원이 카드의 도난·분실사실을 전혀 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동안 부정사용의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아진 경우, 카드회원이 카드관리상의 주의를 충분히 하였으나 카드를 도난 당하였고 가맹점이 서명의 위조를 과실로 인하여 발견하지 못한 경우, 회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신의칙상 타당치가 않다. 따라서 카드회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감경함이 타당할 것이다³⁷⁾.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

① 남자회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카드 앞면의 회원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숫자가 1이면 남자를 의미하므로 가맹점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기만 하면 카드상의 회원이 남자임을 알 수 있어 회원 본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가맹점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³⁸⁾.

3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 2273호 판결 ; 판례월보 200호, 1967. 6, 86면.

38) 대법원, 1991.4. 23. 선고, 90다 15129호 판결.

② 신용 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성년자인 갑이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용케 하였을 때, 위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이를 상환할 책임이 있게 되나, 위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직접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갑에게 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³⁹⁾.

이 밖에도 신용카드의 서명란에는 서명이 한자로 되어 있고 그 필체도 다른 한글로 매출전표에 서명하였고. 한번에 고액의 상품을 다량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와 신분증을 대조하거나 서명이 일치하는지 전혀 조사함이 없었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책임을 감경할 것이다.

따라서,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부정사용하였을 때에 그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 것은 약정에 의한 것이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서 당시 상정하지 못하였던 사정이나 카드회사의 손해방지의무를 해태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까지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카드 회원에게 손해를 전부 부담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손해를 감경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지로 재구성해 보면 ①카드상의 도난·분실책임이 모두 회원에게 귀속한다는 약관은 원칙상으로는 유효하다. ②도난·분실의 신고를 받은 후에는 발행회사가 가맹점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신고 후 이의 통지가 가맹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원이 도난·분실의 책임을 진다. ④가맹점에의 통지나 가맹점의 black list 확인의 해태 및 신고 통지전의 가맹점의 카드 회원 신원확인 해태 등의 경우에는 신의칙상 회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 회사는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맞게 약관(회원규약)을 개정하였으며, 신고전의 경우에도 200만-500만원의 카드 도난보험에 가입하여 문제

39) 서울지방법원 제5민사부, 1997. 6. 25. 선고, 97나859호 판결.

를 많이 해결하였다.

또한 외환은행의 VISA카드도 수년 전부터 입회비 없이 년회비를 2만원씩 받으면서 카드 분실의 경우 회원책임을 신고 15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 중 2만원만 부담하게 한 정책을 취하였는데, 1993년 1월부터는 모든 카드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였다.

개정회원약관 제16조 2항(비씨카드)은 도난·분실 신고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까지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법제가 50\$까지를 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다소 차이는 있다. 미국은 카드회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통지전 부정사용에 대하여 50\$까지를 회원의 부담으로 규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약관은 선의인 카드회원에 한해 사고신고전 15일 이후의 사용분에 대하여만 2만원까지 손실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카드산업계는 연방소비자신용법이 나온 이후 책임부담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연회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American Express나 Diner's Club은 회원이 카드를 도난 당한 경우 회원에게 2만원 내지 4만원의 소액의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는 있지만, 실제 연회비로 받아 가는 금액이 매년 4만5천원이라고 하니 이는 미국 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II. 加盟店의 損失負擔

1. 事故申告前의 損失負擔

현행 회원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사고신고전 15일 이후 사용분에 대하여 손실 부담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전 15일 이전의 사용분에 대하여는 손실부담을 져야 한다. 하지만 「거래자가 진정한 카드회원인지 여부를 확

인하지 않고 카드소지자와 거래한 가맹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비록 도난·분실신고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어도 신용카드회원은 면책되고, 가맹점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⁴⁰⁾

그렇다면 가맹점의 주의의무(보통 가맹점약관 제3조 1항)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1) 加盟店의 注意義務

① 本人與否를 確認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일신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비씨(회)약관 제3조제1항). 따라서 가맹점은 카드사용자가 카드를 제시하고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매거래시마다 카드보유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信用卡의 眞偽與否 등을 確認해야 한다.

가맹점은 카드보유자가 제시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경과여부, 위조·변조여부, 도난·분실 등으로 사고신고가 되어 거래정지가 된 카드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加盟店은 賣出傳票上의 署名이 카드上的 署名과 一致하는지를 確認해야 한다.

다만 어느 정도 서명이 일치할 때, 가맹점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육안에 의해서 통상의 주의만으로도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다른 것을 간과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에게 손실부담의 책임을 물

4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1993. 7.9. 선고, 93가소 204229호 판결.

어야 한다 41).

② 도난·분실 후 회원이 지체없이 발행회사에 소정 양식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신고와 통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가맹점이 사진·서명이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 하는 등 발행회사나 가맹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회원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⁴²⁾.

④ 信用販賣의 限度를 遵守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되고, 그 구분에 따라 신용판매의 한도가 다르다. 그리고 카드 회원이 이러한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용구매를 하려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비씨(회)약관 §10③). 개정 비씨카드 가맹점약관 §5①은 가맹점은 매거래마다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카드회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CAT기에 의하여 조회를 하지 않거나, 카드회사의 거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회 이용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손실은 가맹점의 부담으로 한다.

가맹점이 위에서 설명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카드회사는 가맹점의 카드대금지급청구를 거절 할 수 있으며, 이미 그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가맹점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에 근거하여 그 반환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⁴³⁾.

4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다카 739호 판결.

42)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 1490호 판결.

43) 김은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시 손실부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1993, 93쪽.

2. 事故申告後の 損失負擔

가맹점규약에는 사고카드의 신고로 가맹점마다 거래정지된 무효카드의 목록이 비치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시에 반드시 무효카드목록을 확인하여 사고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에서는 회원의 카드 도난·분실 신고가 있는 후에는 부정사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한다(국민(가)규약 제5조2항)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대법원 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시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3. 信義則에 따른 加盟店의 損失負擔義務 制限

도난·분실된 카드는 그 부정사용자가 카드상의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가 쉬워서 서명의 대조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명확인 의무는 그것이 통상의 주의만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다르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하여 가맹점의 주의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신용거래의 확대와 카드산업의 육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Ⅲ. 信用卡業者의 損失負擔

통지전 손실부담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1992. 10. 개정신용카드약관은 카드회원이 사고신고를 한 날을 기준 삼아 그 책임의 귀속을 정하지 아니하고, 도난·분실 신고접수 시점부터 15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회사가 그 손실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민(회) § 10②, 외환(회) § 15②).

이처럼 사고의 통지가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귀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고시를 언제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당사자의 이해가 대립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양분되어 있다.

회원은 신고 이후 카드발행인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맹점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견해와⁴⁴⁾, 신용카드거래에서는 카드발행인이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카드거래의 안전성확보 등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고시를 책임분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⁴⁵⁾.

생각컨대 신고시의 결정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회원의 신고후 카드발행인이 도난·분실의 통보를 가맹점에 송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통보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는 결국 카드발행인의 업무처리(사고로 인한 거래정지통보업무)중에 발생한 손실이므로 카드발행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 카드발행인은 카드거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므로 카드발행인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고시의 결정을 가맹점에 통지가 도착한 때가 아닌 카드회원의 도난·분실을 신고한 때로 보는 것이

44) 최기원, "신용카드 도난·분실에 의한 책임", 법률신문, 1987. 3. 9.자.

45) 김문환, "크레디트카드의 무단사용" 법률신문(제1610호), 1985. 10. 28. 12면.

타당하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의 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그리고 이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한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IV. 外國의 立法

1. 不正使用에 따른 損失負擔

(1) 美 國



미국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제의 내용을 결론부터 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카드회사부담주의에 서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평성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가맹점 또는 회원부담주의가 적용된다. 또 예외적으로 회원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그 책임 범위와 책임요건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1) 카드會社 責任主義原則

1970년 개정된 貸付眞實法(*Truth in Lending Act* : TILA)제133조에 신용카드에

Act, 1970)을 추가·신설하였는데⁴⁶⁾, 카드부정사용시 카드회원은 수령된 카드의 통지전의 사용에 대하여만 일정조건⁴⁷⁾을 갖춘 때 한하여 50달러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카드회사책임주의 원칙에 서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카드보유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고신고는 카드보유자 스스로가 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카드회사가 그 카드의 부정사용의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 이후에는 카드보유자는 면책되고 카드회사가 손실 부담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입증책임도 카드회사에게 있다⁴⁸⁾. 다른 州의 법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에서 설명한 책임한도보다 더 적은 책임한도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州의 법이나 합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⁴⁹⁾. 또한 카드회

46) 동법의 내용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unsolicited card)의 발급을 금하며, 부정사용에 따른 회원의 책임을 \$50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부정사용으로 1년에 \$5,000이상의 물건을 산 자는 \$10,000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쌍방을 병과한다고 규정하였다.

47)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카드가 수령된 크레디트카드일 것
- ② 책임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③ 카드회사가 카드보유자의 잠재적 책임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하였을 것
- ④ 카드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카드보유자가 카드회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의 기술을 카드회사나 카드보유자에게 할 것
- ⑤ 카드보유자가 카드회사에게 카드 도난·분실 등을 신고하기 이전에 부정사용이 이루어 졌을 것
- ⑥ 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인이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식별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을 것

48) TILA 제133조 (b)항.

49) TILA 제133조(c)항.

참고)이 법은 회원과 회사와의 손실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회사와 가맹점간의 손실부담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가맹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TILA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判例의 法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ridge, "Aspects of The Law Relating to Credit Cards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28 Northern Ireland Legal Quarterly, 1977, pp.382~401) ; 김은철, 앞 주43)전개논문, 63쪽.

원은 부정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⁵⁰⁾.

貸付眞實法은 사업이나 상업목적 또는 단체를 위한 신용공여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거래⁵¹⁾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⁵²⁾ 법인이나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회원인 경우의 부정사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聯邦準備委員會가 規定Z(Regulation Z)를 개정하여 모든 카드에 적용되도록 하였고⁵³⁾, 1974년 貸付眞實法이 개정되어 제135조가 추가되면서 법인카드도 적용되었다.

2) 카드會員이 責任을 지는 경우

15USCA 제1062조(o)항에서 “不正使用(unauthorized use)이란, 카드사용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암시적인 또는 외견상의 권한이 없는 카드회원의 자에 의한 사용으로서 카드보유자가 이득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⁵⁴⁾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리권이 존재하였거나, 부당이득이 존재하였을 경우에는 카드보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먼저 대리권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묵시적 권한의 대리인데, 사실상 카드로 인한 모든 거래는 카드의 점유로부터 이루어지므로 묵시적으로 카드의 점유를 양도했다라도 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禁反言의 原則에 따라 카드회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⁵⁵⁾. 둘째, 무권한자가 사용하였거나 이득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가족간의 사

50) TILA 제133조(d)항.

51) 전화카드가 발행한 신용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송명선, 앞 주8)전계논문, 16쪽.

52) TILA 제104조.

53) Comment, “Unauthorized Use of Credit Cards and some related Questions ; What Problems Remain? ”, Kentucky Law Rev., 1973, p.896.

54) 원문은 다음과 같다.

(o) The term “unauthorized use”, as used in section 1643 of this title, means a use of a credit car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ardholder who does not actual, implied, or apparent authority for such use and from which the cardholder receives no benefit.

55) Magnolia Petroleum Co, v. McMillan사건 : 168 S. W. 2d 881(Tex. civ. App. 1943)
Neiman-Marcus co. v. Viser사건 : 140 S.2d 762(La. App. 1962).

용인데 이때도 카드보유자의 책임 하에 있게 된다. 그러나 이때에는 일반적인 대리와 원상회복의 개념에 의해 책임부담을 지우고 있다⁵⁶⁾.

(2) 英國

영국의 CCA 제83조·제84조에서 도난·분실한 카드회원의 책임을 £30으로 제한(약정에 정한 금액이 낮으면 그에 따른다)하였는데, 현재의 Barclay Card나 Access(영국의 2대카드회사)의 회원약관에는 £25로 낮추었고 실제로는 정직한 카드회원에게 전혀 징수치 않는다고 한다⁵⁷⁾. 이러한 카드회원의 책임제한은 카드회원이 동의하여 타인에게 사용토록 허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이든 카드회원이 카드의 도난·분실을 카드발행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한 이후에는 면책되며(§84-3), 이 신고는 카드발행인이 수령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나 구두신고의 경우 약관으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엔 보완이 없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다(§84-5). 또한 약관에 신고를 받을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며 이 요건을 못 갖추면 카드회원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면하다(CCA §84-4).

한편 카드회원이 카드나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또는 자신이 카드를 처음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책임이 없다(CCA §66). 이러한 모든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카드발행회사에 있다(CCA §171-4).

(3) 獨逸

독일에서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독일의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과 전후하여 경제범죄대책전문위원회와 정부에서 1986년 5월 15일에 공포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경제범죄대책법(Das zweite Gesetz zur Bekämpfung der Wirtschaftskri-

56) 따라서 입법의 취지도 반환의무가 있는 이득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 Comment, Ibid.53) kentucky Law Rev., 1973, p.898.

57) Gordon Borrie and Aubrey L. Diamond. "The consumer, Society and The Law", 4th ed., Penguin Books Co., 1983, p.241.

minalität) 중에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표카드 및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① 수표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교부(Uberlassung)에 의하여 인정되어졌던 발행자로 하여금 지급을 행하게 할 가능성(Möglichkeit)을 남용하여 그에 의해 발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3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처한다. ② 제248조의 a(사소한 가치의 물에 대한 절도와 횡령)를 준용한다⁵⁸⁾.

第 3 節 連帶保證人の 責任과 그 制限의 問題

I. 從前의 約款廢止

신용카드보증인제도는 판례에서 계속 그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입법적 문제가 지적되어 1992년 10월 1일자로 개인회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제도는 전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위 논의는 법인회원에 관하여서만 논의의 실익이 있다(법인회원약관 제4조). 현행 법인회원의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법인회원으로 가입코자 하는 회원에게 카드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게 한다.

② 연대보증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내국인 거주자이고,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이 일정액(보통 5만원 이상)수준 이상으로 당해 신청 기업의 과점주주,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하고 있다.

③ 법인회원의 보증책임은 카드사업자가 회원에게 한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한도, 무역외 경비지급한도, 해외사용한도 범위내에서 카드 사용대금 연체일의 다음달 결제일까지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의 합계액과 부대

58) 경제범죄대책법 제266조의 6.

채무로 하고 있다.

④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기간은 카드의 발급일로부터 당해 카드의 유효 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증인제도는 철저한 개인별 신용조사를 거친 후 카드발급을 하고 있고, 카드 회원이 신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제도에 의해 해결하거나 카드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손실로 흡수하여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⁵⁹⁾. 그러나 전문 신용조사기관의 설립과 철저한 신용조사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신용사회의 정착이 이루어졌을 때는 카드사업자의 누적되는 경영악화를 줄일 수 있어 완전 보증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지리라 예상되고 현실까지는 카드보증인제도와 별개 방법에 의해 카드이용자의 인적 담보로서 보증인 제도는 계속 활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간단한 언급만 하고자 한다.

II. 保證人 制度의 法律關係

1. 成立要件

보증은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이고 보증계약은낙성계약으로 보증인의 청약과 카드사업자의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약이 의사표시는 보증인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이 하여야 하고 카드사업자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도록 가입신청서의 소정란에 보증인의 기명, 날인을 반드시 보증인 스스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의사표시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최초의 가입 신청서는 물론 신용카

59) 강경모, 「알기 쉬운 신용카드」, 선영사, 1996, 152~153쪽.

드 회원의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받을 때와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신용카드의 종류가 변경되어 이용한 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도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保證期間

회원약관에서 “최초 카드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회원약관 제4조 제3항). 만일 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재발급 되는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발급으로 인한 보증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동약관 제4조 제4항), 유효기간의 만료로 사용카드를 자동으로 갱신 발급할 때에는 회원규약은 대부분 자동 갱신발급 규정을 두고 회원의 이용실적과 신용도를 평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확인할 기회가 없어 갱신·연장될 경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즉 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자동갱신 기간까지 연장되지 아니하고 종료됨으로 자동갱신의 경우에는 카드사업자는 보증인의 의사표시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3. 保證解止

신용카드의 연대보증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속적 근보증으로 보증인에게 보증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의 거래상태 불량으로 거래정지 처분을 한 후 대금의 지급변제 완료 등 처분해지 사유에 의하여 이를 해지할 경우 보증인은 거래정지 처분의 사실통보에 의하여 해지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카드사업자는 보증인이 보증해지권을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거래정지 처분을 해제함에 있어서 보증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며 이러한 경우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보증인이 보증해지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카드사업자가 보증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회원의 보증인 교체 또는 신용카드의 회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책임이 미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Ⅲ. 會員規約上의 保證人의 責任 및 그 制限

1. 保證責任

중전의 약관에 의한 일괄적 계약이 아니라 일반 약정에 의하거나 카드보증인 제도와 별개의 일반보증제도에 의해서 보증이 가능함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보증채무의 범위는 상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이용대금의 지급채무, 현금서비스 채무, 연회비와 신용카드 발급수수료, 카드사업자가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 배상금 등을 말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등의 사고신고를 한 때로부터 15일 이전의 사용된 신용카드 이용분과 신용카드 회원가족, 동거인에 의하여 부정사용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카드사업자가 정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동 카드를 분실·도난 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保證債務를 인정한 判例

①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일반구매,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등 각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 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⁶⁰⁾.

②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이 가입 당시 다소 불량한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에게 회원모집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

60) 대법원 1989. 5. 9선고, 88다카 8330호 판결.

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한들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⁶¹⁾.

2. 保證責任의 制限

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원의 월수입과 재산상태 등을 확인하고 대지급 능력을 감안하여 가입시키고 있으므로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카드사업자가 정한 이용한도액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가맹점에서는 매거래시마다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사업자에게 거래승인을 받고 있어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이용한도액으로 제한한다.

(1) 保證責任을 制限한 判例

①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카드회원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그 보증인에게 통지하거나 그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 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이 사건 보증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보증인의 채무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⁶²⁾.

② 신용카드회원규약에 정해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카드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카드 사용대금 채무만을 연대보증하는 것이고, 카드회원이 가맹점과의 공모로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⁶³⁾.

61) 대법원 1992. 11. 24선고, 91다 22261호 판결.

62) 대법원 1991. 4. 23선고, 91다 3871호 판결.

63) 대법원 1995. 8. 22선고, 95다 12040호 판결.

③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담보인의 신용거래한도 내에서 그 대금지급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일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 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음에도 은행에서 계약해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에게 그로 인한 거래정지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채 연대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곧 재거래토록 허용하여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한 경우 위 재거래이후의 이용대금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⁶⁴⁾.

위 판례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카드 회원이 입회 신청시에 보증인도 그 규약을 승인한 후에 신청서에 연서날인하고 있는 바, 그 보증계약은 채권자인 카드발행회사와 보증인과의 개별계약으로서 특히 카드 계약상의 보증은 계속적 계약인 ‘근보증’이며, 적어도 보증기간과 이용한도액에 대한 규정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회원규약에 정해진 이용한도액이 특히 보증한도액이라고 정함이 없더라도 보증을 서게 되는 여러 여건이나 아직도 합부로 회원모집을 하는 형편상 보증인의 책임을 월간이용한도액의 범위내로 함이 공평하다.

그리고, 법원은 “카드사용 대금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약관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이용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임직원 본인들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보증인의 책임은 회원의 월간 사용한도액으로 하는 등 회원 보호입장에서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약관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의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다.

6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다카 1587호 판결 ; 법원공보 744호 35면.

第 4 節 賣買契約에 따른 카드會員의 抗辯權의 問題

I. 抗辯權의 法律關係

1. 抗辯權의 意義

항변권이란 민법상의 매매계약에서 그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배상을 청구하며, 또한 하자 없는 물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카드 관련 항변은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카드업자에게 취하는 항변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취하는 항변으로 나뉘어진다.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사업자에 대한 항변은 신용카드 회원이 구입한 물품 등에 하자를 사유로 카드 이용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형태이며, 카드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항변으로는 신용카드 회원이 구입한 물품 등의 하자를 이유로 카드사업자가 가맹점의 카드 이용대금 청구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형태이다.

2. 抗辯權의 類型

신용카드 거래에서 나타나는 주요 항변권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 회원이 구매시에 무능력자였을 경우 구매행위에 대한 항변
둘째, 착오·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물품의 구입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는 항변
셋째, 매매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가맹점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항변

넷째, 가맹점이 약정한 인도시까지 물품을 인도 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항변

다섯째, 불량거래자로 통보된 자와 거래하였거나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이용토록 한 항변

여섯째, 허위매매, 과장매매, 자금 유통수단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항변 등이 있다.

3. 抗辯權 行使要件

신용카드 회원의 항변권은 절차, 금액, 기한 및 위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節次上 制限

신용카드 회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의 정지를 카드사업자에게 요구하려면 항변사유의 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할부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할부기간 이내에 해당 가맹점과 신용카드 사업자에 항변사유를 서면 통지하고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去來金額 制限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업자에 대하여 항변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일정액 이상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3) 期限의 制限

신용카드 회원이 할부금구매 계약 체결일(매출전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카드사업자의 계약철회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카드사업자는 가맹점에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만약 7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상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거나 물품의 하자 등 이행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항변권의 행사는 할 수 없다.

(4) 位置의 制限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업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래시장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한하고 해외에서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는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금결제수단으로 카드를 이용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예컨대,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그것이 카달로그 또는 광고에 나온 것과 다르거나 계약체결 과정시 약정했던 것과 다른 경우 또는 그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다당사자카드의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신용카드를 매개로 상품의 구입이 있고, 카드보유자는 카드를 제시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신용구매를 하면 그 대금을 카드회사가 카드회원 대신 가맹점에 지불한 후 회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는 형식의 구조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카드발행회사를 상대로 예컨대, 매매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이나 상품의 미인도, 상품의 하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항변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매매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의 항변권의 문제만을 다루기로 하고, 항변권의 인정범위를 분할급과 일시급을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II. 分割給의 경우

1.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第12條의 規定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사유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1) 동법 제1항

①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목적물의 종류, 내용 및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 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고,

② 신용카드를 사용한 계약인 경우로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 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제2조 제1항 제2호)인 경우에는 위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위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20만원이다) 이상이고,

③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제품이 아닐 것

④ 할부구매시 약정한 할부구매기간 이내에 해당 가맹점 및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온 경우에 한한다.

(2) 동법 제2항

신용제공업자인 카드회사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동법 제3항

이 경우 매수인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인 카드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4) 동법 제4항

할부금을 거절하기에 앞서 매수인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구입자(카드보유자 또는 회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되는데(제13조), 이것은 당사자 합의에 위임하여 두면 구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約款의 規定內容

(1) 個人會員約款 第20條

동약관 제1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내용과 동일하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할부금의 잔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3항, 제1항의 경우 할부금 지급거절의 사유가 귀책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할부금의 해당 약정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카드會員約款 第13條 第5項의 適用問題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 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등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으로 회원이 타인으로 하여금 대금지급거절권의 행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 하였을 경우 약관규정의 내용대로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행사할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리에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立證責任

(1) 會員이 抗辯으로서 提出하는 경우

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할부거래를 하였다는 점,

- ②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
- ③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라는 점,
- ④ 신용카드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會社가 再抗辯으로 提出하는 경우

- ① 위 매매목적물이 위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② 할부계약이 회원을 위한 상행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위 법 제2조 제2항)이라는 점.

Ⅲ. 一時給의 경우

이 경우에는 분할금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리해석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抗辯許容說과 抗辯不許說이 있을 수 있다.

항변불허설은 카드회사가 당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일반매매계약과 달리 매수인이 항변사유를 전혀 주장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분할금의 경우와 달리 본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내지는 民法상의 同時履行의 抗辯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항변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⁶⁵⁾.

그러나 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신용카드 회원이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인정하나 일시불 구입의 경우에는 물품의 하자가 있더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 약관은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중 개인신용카드 회원의 거래만을 인정하고 법인회원의 거래는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보호적인 차원에서 항변권을

65) 조정욱(연수원27기), "신용카드에 관한 민사적·형사적 쟁점의 고찰 : 주제와 판례 중심으로", 법촌 법조인단지 세미나 자료(1997. 2. 22).

제한하고 있으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구매한 물품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카드 회원의 거래일지라도 항변권이 없다고 본다⁶⁶⁾.

따라서 일시급에 관하여도 신용카드거래에 관련된 명확한 입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V. 關聯問題

1. 不當利得의 問題

카드회사는 이미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매수인(카드보유자 또는 회원)의 항변으로 그 대금의 지급이 카드회사에 대하여 지급 거절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대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매도인은 카드회사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同時履行의 抗辯權 등 雙務契約에서 認定되는 權利

매수인은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분할금이 아닌) 잔금지급채무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받는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물건의 인도를 지체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라면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카드결제로 매도인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았으나 매수인

66) 조정욱, 앞 주65)전계논문, 세미나 자료(1997. 2. 22).

은 아직 물건을 인도 받지 못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각 호 중 제2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목적물의 종류, 내용 및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인도가 되지 않은 경우이지 인도를 지체한 경우도 아닐 뿐더러 잔금지급채무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과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같지 아니하여 그대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편 카드회사는 보통 경제적 강자의 입장(다만 경제적 강자라는 이유만으로 카드회사가 불이익을 받아야 할 당위성은 없는 것이므로 매수인을 보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인 것이 보통이고, 가맹점과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때 그 신용상태나 가맹점의 재무구조 등을 조사하여 카드발행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있다고 볼 것이고, 한편 카드회사로서는 수수료를 받는 등을 고려하고, 한편 대금 결제에 관한 법적 성질을 채권양도설로 본다면 카드회원(매수인)이 가맹점(매도인,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카드회사(채권양수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용회사의 카드대금청구에 대하여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⁶⁷⁾. 이것이 신용카드의 현금대체 기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이 통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사정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카드회사와 카드계약을 하는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러한 매수인의 항변이 있을 때에는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인 매도인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카드회원인 매수인을 대위하여 그 이행의 촉구를 요구

67) 조정욱, 앞 주65)전계논문, 세미나 자료(1997. 2. 22).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행의 제공을 받은 매수인은 이와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3. 買受人의 誠實한 紛爭解決 勞力義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는 매수인이 분쟁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 의무이행이 할부금지급거절의 요건사실이라고 본다면 매수인이 지급거절의 항변을 하면서 이러한 점도 주장, 입증하여야 하겠으나, 이는 카드회사가 위 지급거절의 항변을 배척하기 위한 재항변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규정은 매수인의 위 분할금 지급거절을 남용하지 않고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회사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매수인이 그 권리를 태만히 방치하여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질 만한 구체적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카드貸金이 完納된 경우

이 경우에는 신용회사와 카드보유자(회원)와의 계속적 법률관계 중 당해 거래에 관하여는 일단 종결이 된 것이므로, 매수인이 더 이상 매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카드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매수인은 원래의 매매계약당사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따름인 것이다.

V. 外國의 立法

1. 美國

美國은 1974年의 수정 통일소비자신용법전은 카드거래에서 항변절단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동법 제3편 제403조)⁶⁸⁾. 다만 카드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항변을 카드발행자에게 무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4가지의 규제사항⁶⁹⁾의 전부가 만족된 경우에 한해 항변의 대항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항변사유를 통지할 때는 위의 성실한 노력 전에도 가능하며 구두통지 직후 14일 이상 일정기간내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회원은 그 기간내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규약으로 위의 회원의 항변을 제한하거나 절단시킬 수 없다(UCCC § 3-405-5).

그리고 주법과 연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방법이 우선하나, 주법이 연방법보다 소비자를 더 보호하고 있다고 연방준비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주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연방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다(§ 171)

68) 이 법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할부판매계약(installment sales contract)에서 항변권절단규정을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이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폐해가 나타남에 따라 1971년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이를 금지하였으며(36Fed. Reg. 1211-12), Arizona州(ARIZ. REV. STAT. ANN. §14-145A, Supp), California州(Ch. 1079. §4, Cal. Acts 2152-55 ; adding CAL. CIV. CODE §1749. 90), Massachusetts州(MASS. ANN. LAWS Ch. 255. §12F ; Supp) 가 금지하였고, 오늘날 미국의 28개 이상의 州와 District of Columbia 에서 입법 및 관례로서 금지되거나 또는 크게 제한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Yale Law Journal, 81(1971)을 참고하기 바란다.

69) ① 최초의 구입금액이 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② 카드회원의 주소와 매매의 장소가 동일 州내에, 다른 州일 경우에는 100마일 이내에 있는 경우
③ 카드회원이 그 청구 또는 항변에 관해서 가맹점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행한 경우
④ 카드발행인에게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카드발행인이 카드회원 으로부터 항변 사유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당시에 未支給된 金額일 경우

2. 獨逸

獨逸의 학설과 판례는 신용카드회원규약상의 항변권절단을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항변권의 직접행사를 허용하는 판례 이론이 확립되어 있으며, 그것을 독일민법 제607a조로 입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1979년, 소비자신용거래법안).

3. 英國

英國은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제75조⁷⁰⁾에 의거하여 비록 채권자인 여신제공자가 물품공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물품공급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권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채무자인 카드회원은 불량품을 이유로 하여 일반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¹⁾.

CCA 제75조는 비상업적 약정이나 현금가격이 £30이하이거나 £10,000이상인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Consumer Credit Act 1974에 의하여 상술한 관련 있는 여신제공자의 책임은 1977년 6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진 채무자·채권자·물품공급자 삼당사자간의 약정에만 적용된다. 은행들의 책임범위를 물품대금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책임인정은 오래된 카드회원을 불변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체부상이나 재산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⁷²⁾.

70) 채무자·채권자·물품공급자간의 약정이 있으며, 물품공급자가 동시에 채권자인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위반이나 부실표시의 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물품공급자인 매도인과 연대책임을 지며 이는 영국법에 특유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라는 기본원칙의 명백한 예외가 된다. ; Brian W. Harvey,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Trading" , 2d ed., Butterworths Co., 1982, p.249.

71) Gordon Borrie and Aubrey L. Diamond, Ibid.57), p.24.

72) Aubrey L. Diamond, "Commercial and Consumer Credit :An Introduction" , Butterworths Co., 1982, p.331.

4. 日本

日本은 신용카드를 규율하는 근거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약관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법률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984년 6월 2일 改正割賦販賣法은 할부판매방법에 의한 거래(신용카드거래 포함)에 있어서는 항변의 접속을 인정하고, 그에 반하는 항변절단규정은 무효라고 하였다(동법 제30의 4조 제1항·제30의 5조 제1항). 그런데 비할부판매방식에 의한 신용카드거래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변절단규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비할부판매방식에 의한 신용카드거래는 대금지급방법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므로 할부판매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⁷³⁾. 1984년 개정된 일본의 개정 할부판매법은 할부판매방식에 의한 거래(신용카드거래 포함)에 있어서는 항변의 접속을 인정하고, 그에 반하는 항변절단규정은 무효라고 하였다(동법 제30조의 제41항, 제30조의 제51항).



73) 新原卓郎, “クレジット・カード取引と抗辯の接續,” 「判例リリース」, クレジット取引法, 1986, 565面.

第 4 章 信用卡會員의 保護方案

第 1 節 現行 制度의 導入背景

I. 制度改選의 必要性

최근 할부금융사·리스·신용카드·신기술사업금융 등 특정형태의 여신업무만을 담당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경우 과도한 경쟁과 경영악화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더구나 OECD가입에 따라 관련산업의 대외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관련제도의 정비가 요청되었다. 기존의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예금없이 자기자본 및 차입금만으로 제한된 범위의 여신업무만을 수행하는 단종금융기관으로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단종금융기관들은 개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업무영역도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금융여건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금융중개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현행 단종금융기관 관련 법률체계와 관련시장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업무관련 규제가 엄격하여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실상 단종금융기관의 취급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업무는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그대로 관련제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97년 1월에 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 개편방안을 검토하여 97년 7월말 국회를 통과하여 1997년 8월 29일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5375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1998년 1월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다. 아울러 1998년 4월 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동년 4월 24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일반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예금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제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또한 미국 등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여신전문금융기관은 별도의 법에 의한 규제 및 감독을 받지 않으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업무방법 및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가 작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¹⁾.

이처럼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설립이 매우 쉽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회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는 염려가 앞선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요구된다. 국내카드업은 우선 내수시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업체간 과다경쟁·고율의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수익기반의 취약성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및 카드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 동안 舊,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업자의 인가에 관한 조문들이 대부분이고, 정작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조문은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신용카드거래시에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회원의 수수료 부담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가맹점공동이용과 건전한 소비를 위한 이용한도의 적정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한 철저한 신용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카드회원의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개선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어느 정도 이를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철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 카드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의 해결에 앞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금융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서근우 외 3인, “여신전문금융기관 구조개편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7, 1~9쪽 및 79~80쪽.

Ⅱ. 與信專門金融業法の 制定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업이라 함은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 및 보증 등 각종 여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일컫는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資格條件

여신전문금융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은 수신기능이 없어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허가제로 존치시키고 있다. 즉, 신용카드업을 하고자 할 때 舊, 신용카드업법에서는 재정경제원의 ‘인가’ 를 받아야 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허가제로 바꾸었다(동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희망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3조 내지 제5조).

아울러 최소자본금이 “200억 이상이던 것을 2개 이하 업종을 영위할 때에는 200억원 이상, 3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때에는 4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로서(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법인에 한한다(동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의 조건을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그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소유주식수를 합한 경우에 그 주주 모두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수가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주식수를 동시에 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업법상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인가를 받고 그 동안 영업을
해오던 판매점계 신용카드사의 경우 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겸영여신업자인
만큼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예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동법 제5
조 제2항).

舊,신용카드업법상 가맹점의 설치시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사항이었던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삭제되었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겸영여
신업자 즉, 판매점계 신용카드사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대
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즉,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대통령령(승)으로 정한 판매점계 신용카드사인 겸
영여신업자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당해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 당해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당해 겸영여신업자의 상호·상표·경영기법
등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2. 加盟店共同利用體制

은행계 카드사는 국민카드계열, 외환카드계열(장은카드 포함), 비씨카드계열 등
3개군, 전업사계열인 삼성, 다이너스, LG, 동양 등은 각각 별도의 4개의 가맹점
군을 형성하여 합계 7개의 배타적인 가맹점 군이 있다. 이처럼 별도의 가맹점 군
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원이 모든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려
면 최소한 7장의 신용카드가 있어야 하는 카드발급상 남발의 문제가 발생하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가맹점(지점망)확보 비용, 내부관리비용의 중복투자
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위장가맹점의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 입장에서도 최소 7개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고객을 확보할 수 있

으므로 다수의 예금계좌 및 다종류의 전표관리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가맹점이용체제를 개선코자 1997년 가맹점 공동이용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행 초기 단계부터 회원측 카드사와 가맹점측 카드사간의 수수료 배분문제로 논란을 거듭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2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와 같다)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1998년 1월 13일 개정)은 가맹점공동이용을 명시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공동이용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을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간에 지급되는 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동법 제23조 제3항).

현재(1997년12월) 외환카드계의 경우 회원은행은 수수료전액의 87.5%, 가맹점소속 은행은 12.5%를, 국민카드계의 경우 회원은행은 수수료의 70%, 가맹점소속 은행은 30%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다.

3. 業務領域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 외에 일반대출·어음할인·팩토링 등 부대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동법 제46조),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의무취급비율을 전체 취급여신액의 100분의 40이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비은행 단종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구분지어 <표IV-1>와 같이 핵심업무, 부대업무, 공통업무로 나눌 수 있다.

<표Ⅳ-1>

신용카드사의 업무현황

(1998년 3월 현재)

업무구분	비은행 단종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기관
핵심업무	회원, 가맹점 모집 후불카드(일시납·분할납 카드이용대금결제) 신용조사(핵심업무관련)	회원, 가맹점 모집 현금서비스 후불카드(개인 및 법인)
부대업무	채권발행, 선불카드, 현금서비스, 할부금융, 카드론, 팩토링, 직불카드 (은행계 카드사만) 신용조사 (부대업무관련), 기타(환전, 보험대리, 여행알선, 통신판매)	선불카드 직불카드 기타 (환전, 보험대리, 여행알선, 통신판매)
공통업무		대출, 보증, 팩토링, 채권발행, 신용조사(업무관련)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4. 資金調達方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기관차입, 사채 또는 어음발행, 보유유가증권매출·양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되(동법 제47조 제1항),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및 유가증권의 발행·매출에 대하여는 수신성격을 갖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그 방법 또는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제2항).

5. 債券發行의 特例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상법(상법 제47조)에 대한 특례(자기자본의 10배)를 인정하여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동법 제48조 제1항).

6. 기 타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은 이를 폐지한다(동법 부칙 제2조). 그리고 벌칙도 강화되어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판매·사용한 자에 대한 미수범 규정을 새롭게 두었다(동법 제70조 제5항).

第 2 節 問題點의 概觀

I. 通貨管理 問題

은행계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경우 예금 계수 확대로 통화량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카드채 발행 등 통화중립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지속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단지 신용카드 사용한도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한편 외국은행계 신용카드사 등이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경우 국내계는 제한하면서 외국계는 제한을 두지 않는 등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와 관련한 문제는 신용카드사 자율에 일임하고 다만 여신급증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의 자산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II. 法人카드에 대한 割賦購買 許容 問題

현재 법인카드에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구매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신용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시에 법인카드에 할부구매 및 카드론을 허용토록 하자는 것이 계속 논의중에 있다. 할부구매(분할납)인 경우 카드대금결제기능으로서 신용카드업의 핵심업무이므로 이용자를 현행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규로 설비되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기존 신용카드사에 부여하였던 할부금융업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카드에 할부구매(분할납)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구매(분할납)와 할부금융사를 통한 할부구매와 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먼저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구매(분할납)는 사전적으로 결정된 한도 및 기간내에서는 용도지정없이 신용이 공여되는 것이고, 할부금융사의 할부구매의 경우는 개별로 용도가 지정되어 신용이 공여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카드에 할부구매 허용을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일정한도를 설정하여 일반대출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실채권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사들이 스스로 신용평가를 강화하는 등 신용위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법인카드에 할부구매 허용초기에는 신용카드사별로 총액기준으로 일정한도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한도를 폐지하자는 검토가 나왔다.

第 3 節 會員의 保護方案



신용카드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적 해결뿐만 아니라 이미 제도화된 “금융분쟁조정제도” 라든가 “개인신용평가제도” 등을 홍보·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아직 용어상 낯설지는 모르나 은행이 보험업무를 함께 함으로써 신속하고 저렴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카슈랑스” 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늘날 현금대신에 전자화폐가 등장하여 새로운 통화금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도입단계에서 우려되는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불이익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토록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자.

I. 金融紛爭調停制度²⁾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이용자(금융소비자)간에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용자가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소방안을 제의하거나 중재 의견을 제시,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사법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지만, 금융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따르며 또한 분쟁의 내용이 소송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금융거래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과 약자인 금융소비자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을 공정한 위치에서 조정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II. 個人信用 評價制度³⁾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얼마까지 그 제공대상이 금융 기관에만 제한되어 있어 백화점이나 기업 등은 신용 정보집중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용정보 체제구축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선진신용사회를 목표로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이 95년 7월 1일자로 제정되면서 종합적인 신용정보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개인의 대출, 연체, 당좌예금, 신용카드개설 및 해지 등 모든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 백화점협회등에 집중되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정보의 대량유통시

2) 김영기, “금융분쟁조정제도와 신용카드 관련 금융분쟁”, 「계간 신용카드」(제12호), 1996. 9, 92~95쪽.

3) 이명식, “향후 신용카드 사업의 발전과제”, 「계간 신용카드」(제10호), 1996. 3, 16쪽.

오·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설정되었는 바, 주민등록번호, 연체, 부도사실, 대출, 보증, 담보제공, 법원판결, 조세 체납사실 등은 신용카드개설, 해지 및 연체사실등과 같이 집중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개인의 거대상황정보와 재산채무, 소득, 납세실적 등은 제외시켰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이 없는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들⁴⁾이 정보를 이용할 때는 신용사용 신청자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5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을 6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들의 신용정보가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개인신용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신용정보망구축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원인으로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는 바, 하나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신용정보기관이 설립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신용정보법 내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조회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의 자본요건을 30억원 이상으로 정한다.(대통령령 1997. 12.27.)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범위에 전기통신사업자 및 초고속 정보통신사업자 등을 추가해 이들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정보업의 허가가 신용조사업무 . 신용조회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등 업무의 종류별로 이뤄지게 됨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및 설비와 인력요건도 허가 받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구분에 정한다(총리령 97. 12. 27.).

신용정보법이 제공토록 허용한 공공정보의 내용은 <표IV-2> 와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부서에는 정보사용 취지위배 및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유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이다.

4) 현재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조사나 신용조회를 의뢰하면 맡아 봐주는 신용정보 업체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기존 5개 기관만 인정하고 있다. ; 이명식, 앞 주3)전개논문, 18쪽.

<표Ⅳ-2> 신용정보법이 제공토록 허용한 공공정보

관할부처	관 련 정 보
국 세 청	세금채납, 휴·폐업, 지분양도 법인등록 관련정보처
법 원	금치산-한정치산, 파산선고 경매-경매관련 정보
내 무 부	출생-사망 등 개인의 주민등록관련정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벌금, 과태료 공공요금채납정보

***자료) 계간 신용카드 1997년 3월호

결국 신용사회의 정착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세금채납이나 금치산 선고등의 신용정보가 거래상대방에게 알려져 피해를 사전에 방지시켜 주어야 함에도 상기한 이유로 사용되지 못할 경우 특정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Credit Worthiness)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게 된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되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었다가 등록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 즉시 신용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부도거래처에 대한 불량거래 해제절차를 간소화시켜 신속한 금융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 1일부터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용불량정보 기록삭제 특례조항이 종전에는 주의·황색 거래처 중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제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기록을 삭제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30일로 신용불량정보 기록삭제 특례조항을 확대하여 일시적인 연체자에 대한 빠른 신용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관리기간”을 “기록보존기간”으로 개정하여 용어 개념상 가능함을 명백히 하였다.

이외에도 적색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체 및 그 관련인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업체 및 그 관련인 등에 대하여 적색거래처에 대한 조치(당좌해지, 신규여신금지 등)를 취하지 않는 “규약적용배제” 대상에다가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받은 기업체 및 그 관련인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부도거래처의 해제 및 정정 처리시 연합회에서 각 해당 은행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일괄 처리함으로써 해제 처리시 약 20~30일 가량이 소요되던 것을 이들 처리를 해당 은행으로 이관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금융거래를 도모하였으며, 적색거래처로 등록된 업체중 불건전채권이 증가될 소지가 없고 금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체에 대해 종래 「적색거래처로 등록된 금융기관이 1의 경직성을 탈피토록 하고 기록보존 기간 중에 있는 자라도 신용이 있으면 금융거래개인 경우」로 절차를 완화하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Ⅲ. 보험제도

보험과 은행의 업무제휴를 뜻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프랑스어의 ‘Banque’(은행)와 ‘Assurance’(보험)를 합한 신조어로 최근 금융환경변화에 발맞춰 부상하고 있는 업무형태로서, allfinanz, assur-finance 등으로 불린다⁵⁾. 이미 선진 유럽의 금융기관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적극 도입되어 일반화된 이 제도는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변화와 소비자들의 욕구변화, 은행권의 수익성확보를 위한 업무다각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등에 의해 금융겸업화가 이루어졌고, OECD 가입 후 보험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진 이 시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빠르게 확산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카

5) 송정미, “방카슈랑스, 은행·보험 공존공생의 길 열린다”, 「신용경제」, 1997. 5, 106쪽. ; 김성재, “보험관대 성공여부는 비용효율성 및 소비자의 선호도에 달려 있다”, 「신용경제」, 1997. 5, 108쪽.

드사 중 특히 은행계 카드사인 경우 보험업무를 함께 처리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많은 손실부담에 대한 사후 대처면 에서도 일조를 하리라 예상된다. 단순히 연회비 등에 의해 의존하여 보상처리를 하는 방법보다 연회비 대신에 이처럼 보험 형태를 취함으로써 해서 고객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더구나 연체 금액의 부담을 안고 있는 고객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험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데 안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은행계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은행 지점망을 구축하고 있고 또한 이미 고객정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금융 상품들의 시너지 효과가 크리라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활동을 시작했고, 보험보증기금이 일찍부터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회원을 보호하고 위험분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과 보험에 대한 인식이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방카슈랑스의 도입을 제고에 부칠 수만은 없으므로 완전한 방카슈랑스의 도입을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IV. 技術導入

1. IC카드의 導入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중장기적 대책으로 IC카드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IC카드 자체에 전자화폐 기능을 첨가시켜서 가맹점이나 은행창구 또는 단말기에 직접 나갈 필요 없이 개인컴퓨터와 전화기를 활용하여 모든 은행업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홈뱅킹 방법이 이용되고 심지어는 단말기 화면에 카드를 통과 시킴으로써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는 등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다.

홈뱅킹 방법 중 가장 간편한 것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스크린 폰(Screen Phone)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전화는 요금고지서를 지불하고 통장의 예금상

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한 것으로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따로 구입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료도 비싼 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홈뱅킹 방법으로 컴퓨터의 모뎀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홈뱅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개 주요 은행이 이를 이용해서 은행고객이 부담없이 사용토록 수신자 부담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1) 開發現況과 活用範圍

외국과 국내의 개발현황과 활용범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나라들이 개발에 착수하고 있고, 특히 영국의 몬덱스(Mondex)사는 1995년 7월에 영국의 남부 스웨덴시에서 시험운영중이다. 이 카드는 24시간 입출금이 가능하고 대금 결제도 할 수 있으며 개인간의 직접 자금 이체도 가능토록 된 카드이며 ATM 또는 화상전화기를 통해 이용되고 보통거래 시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이용 가능토록 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SIBS가 전자지갑 계획을 발표하여 31개은행간 전자지갑 시스템을 가동중이며, 벨기에는 은행공동으로 '프로통' 이란 전자화폐를 개발하여 156달러의 가치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버스, 공중전화, 자판기, 구멍가게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미국, 호주, 독일, 유럽 연합 등 수많은 국가들이 전자화폐를 사용중이거나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남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중에선 선두주자로 카드개발에 착수하여, 1994년 11월 프랑스의 IC제조회사로부터 칩을 수입하여 '전자지갑' 이라는 국내 최초의 IC카드를 개발하였다⁶⁾. 그리고 주택은행은 여·수신업무 전반을 입력(약 10개좌)할 수 있는 전자통장을 개발하고 있으며, 광주은행은 전자통장과 판매대금 자동결제(EFT/POS)서비스 기능을 주로 제공하되 신용카드, 선불카드,

6) 강경모, 「알기 쉬운 신용카드」, 선영사, 1996, 204~205쪽.

직불카드, 2만5천 명의 전남대학생 학생증, 신분증, 거래통장 기능을 가진 카드를 개발하고 있고, 계좌이체, 홈뱅킹(Home Banking), 펌뱅킹(Firm Banking)등 금융 업무 전반에 걸쳐 개발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은행을 필두로 10여개의 시중은행이 96년 3월부터 도입할 '토비(TOBI)를 개발하여 신용카드 기능 이외에 자금이체, 정산, 펌뱅킹과 홈뱅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96년 7월 시내 일반버스, 좌석버스, 직행버스 등 전 노선 버스에 토큰 대신 정액의 CPU(중앙처리장치)가 내장된 스마트 카드를 도입키로 하고 있으며 택시와 지하철까지도 호환 가능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시행중이다.

또한 내무부에서는 1998년 주민등록증을 전자 신분증으로 대체하고자 방침을 정하고 IC카드를 도입키로 하는 등 행정과 금융이 접목된 폭넓은 카드의 실용화 단계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83년 일제경신, 발급돼 사진만으로 본인을 식별하였는데, 이는 위·변조가 용이해서 신분위장, 금융 및 토지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었다. 이에 정부는 94년부터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다기능카드로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하였다. 제185회 정기국회(1997. 11. 18.)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자료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의 열람은 운영자와 감독자가 각각 다르게 관장하고 열람내역과 담당자의 인적사항, 사용할 때간 등이 컴퓨터로 자동으로 기록·관리되도록 하였다. 자료무단열람·유출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외부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카드 전산망을 일반통신망과 완전 분리된 전용통신망으로 구축했다. 특례규정을 두어 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나 준비사항등을 고려해 카드발급의 완료는 2000년 3월까지 늦췄다.

외국계 카드사인 VISA카드는 선불카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의 기능과 각종 정보를 수록한 IC칩 카드로 PC컴퓨터에 카드를 삽입하고 홈뱅킹, 펌뱅킹, 무역거래 및 인터넷을 통한 국제 홈쇼핑을 할 수 있도록 다기능의 리레이션 카드를 개발 중에 있기도 하며, 국내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전자 및 LG반도체 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IC카드의 기술적 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의 IC카드의 도입은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2) 不正使用에 대한 保安시스템

신용회사마다 IC카드의 도입을 앞다투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를 부정사용함으로써 카드회원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Bull CP8이 개발한 스마트 카드에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테이프 대신에 운영시스템, 메모리 같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 카드의 OS에는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과정을 감시하는 암호 루틴이 담겨져 있다. 또한 칩마다 고유한 인증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카드를 이용할 때 보안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칩이 읽은 비밀번호와 발행사의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준다.

비씨카드가 올해(98년)부터 상품구입 때 카드 소지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비씨카드는 97. 12. 22. 금강·에스콰이어·엘칸토 등 제화3사와 협약을 맺고 이들의 전국 500여개 매장에서 '비밀번호 입력제'를 실시기로 했다. 비씨는 이어 내년 중 백화점 및 전가맹점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3) 기타 課題

IC카드 등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우선 발행주체는 누구인지, 통제수단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또한 컴퓨터 등의 발달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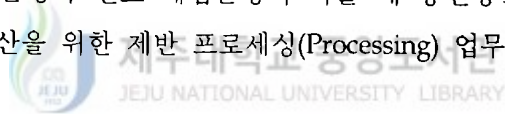
또한 전자화폐의 표준은 누가 정하며 IC카드의 사용에 따른 보안문제는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 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아직까지 전자화폐는 예금은행처럼 예금을 보호해 줄 법적 장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마련도 시급하다.

2. 信用卡조회기 등의 新技術 開發

가맹점에서는 매출전표의 하단 서명란에 회원이 직접 서명토록 하고 카드 뒷면의 본인 서명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대조한다. 회원 본인의 서명에 관하여는 신용카드조회기 등의 신기술 개발로 점점 서명 자체까지도 없어질 것이며, 최근 일본의 경우에는 JCB카드(주)가 세이유의 식품 매장에서 사용한 세컨드 파이프(Second 5)와 세이유 식품 매장의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무효 카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인이 필요 없으며, 스미토모의 퀵카드(Quick Card)는 구매시 사전에 본인 확인을 거쳐 금액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단말기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 금액 내에서 사인 없이 이용토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의 조회기를 설치하는 VAN(Value Added Network부가가치통신망 : 단순한 통신 회선에 단말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정보처리 및 전송 기능을 부가한 통신망)업체는 국내에 6개(한국정보통신(KICC), 한국신용평가(KIC), 금융결제원(KFTC), 한국신용정보(NICB), 한국부가통신(KOVAN) 및 비씨·국민연합VAN)가 있는데, 카드발행 은행과 전표 매입은행이 다를 때 통신망을 통해 거래승인, 대금결제, 은행간 정산을 위한 제반 프로세싱(Processing)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第 5 章 結 論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지급결제수단으로 거래사회에서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의 특히 대다수의 분쟁원인인 부정사용 중에서 도난·분실된 카드에 따른 손실부담 문제와,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매매계약에 있어서 흠결이 있을 때에 카드회원이 카드회사에게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카드거래에 있어서 카드분실 등은 현금을 보관하는 것처럼 그 주의의무¹⁾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카드사의 손실부담을 사고 신고 접수 15일 전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손실부담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카드사의 입장에서라도 철저한 회원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가맹점도 거래자가 진정한 카드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소지자와 거래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비록 도난·분실신고 전이라고 해도 그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용카드회원이 가입 당시 다소 불량한 상태였다고 해도, 신용카드회사에게 회원모집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이다.

1997년 카드산업개방과 더불어 외국카드사들의 대거 국내유입이 예상되는 급변화되는 시점에서 카드관련 분쟁사건이나, 책임분담에 따른 문제가 속출하리라

1) 카드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정도를 보면, 「카드분실에 따른 위험도에 비추어 적어도 현금을 보관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높은 주의의무를 요한다」고 한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73호 판결. ; 한삼인, 「판례민법」, 법률행정연구원, 1998, 460쪽.

예상된다. 더구나 국제적 범죄 전문가들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해가 거듭되면서 금융분쟁도 지능화되고, 그에 맞서 범죄방지를 위해 신기술들도 연구되고 있다.

시기상으로 보더라도 외국에 비해 시작단계에 불과한 국내 카드업시장이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금융산업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인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불신으로 인해 견잡을 수 없는 금융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가맹점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는 카드회사나 카드업 관련법규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가맹점에 대하여도 관련 행정적인 조치를 적절히 병행하여야 한다. 9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이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어, 가맹점공동이용체제나 이용한도액 규정 등 그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입법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97년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활동을 시작했고, 보험보증기금이 일찍부터 존재하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근거법규에는 민법이나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상법을 무시하고 신용카드업자에게 채권발행한도액을 확대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은행업무의 일부인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카드산업이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동법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조문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약관에서 다루고 있을 뿐인데, 카드회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결국 기술의 발전과 법의 신용거래의 법규제는 신용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한 질서를 요구한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은 과소비를 조장하여 국민경제와 가계 소득에 해를 주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개인 신용을 불모로 한 불법 또는 편법 대출의 확산이 사회 문제와 개인신용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카드의 도난과 분실로 인해 습득한 무권한자가 이를 부정하였을 경우 현금을 사용한 사람보다 카드를 이용한 회원이 더 큰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카드의 위조·변조로 인해 입는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가맹점이 신용판

매를 할 경우 판매수수료 등을 카드회원에게 전가시키거나 매출액의 노출을 꺼려 카드사용을 꺼리는 것도 카드문화의 정착에 장애로 남고 있다. 하지만 이 질서가 성공을 거두려면 신용사회가 형성되고 카드이용자의 자기관리와 카드회사의 절제, 가맹점의 성실한 의무이행과 철저한 회원관리와 같은 삼당사자의 공동협력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법규는 행정적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카드 부정사용이나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신용사회의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융합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발전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스스로가 소비자교육에 게을리하지 말고 무지에서 오는 피해를 없애야 한다.

본 논문은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만을 다루었고 카드발급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 세금들은 다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을 기술하면서 아쉬운 것은, 현상학적인 카드거래상의 법률적 책임문제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법이 정립되면서 신규카드업자들이 대거 진입하리라 예상되고 그만큼 카드사용의 횡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법적 문제가 예상됨으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I. 國內文獻

【단행본】

1. 강경모, 「알기 쉬운 신용카드」, 선영사, 1996.
2. 강구진, 「형법강의(각론 I)」, 박영사, 1984.
3. 김문환, 「신용카드 이야기」, EM문고, 1992.
4. 서근우, 「신용카드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7. 4.
5. 서근우 외 3인,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구조개편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7. 9.
6. 이은영, 「신판 민법학강의」, 박영사, 1995.
7.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89.
8. 이흥범, 「신용카드거래상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4.
9. 정동운, 「어음·수표법」, 법문사, 1992.
10. 최기원, 「어음·수표법」, 박영사, 1990.
11. 한상문, 「신용카드법 入門」, 정법사, 1992.
12. 한삼인, 「판례민법」, 법률행정연구원, 1998.

【논문】

1. 김대규, “신용카드거래의 법적 성질과 손실부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 대학원, 1996.
_____, “신용카드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대학원, 1992.
2. 김문환, “크레디트카드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1989.
_____, “크레디트카드의 무단사용”, 법률신문(제610호), 1985. 10. 28, 10면.
_____, “카드약관 정비로 부정사용 막아야”, 「금융」, 전국은행연합회, 1990. 4.

- _____, “신용카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비생활연구』(제11호), 1993. 6.
- _____, “크레디트카드의 실태와 문제점”, 『상법학의 현대적 과제』(단아서정갑박사 고회기념논문집), 삼영사, 1986.
- _____, “크레디트카드 제도의 역사”, 『계간 신용카드』(제10호), 1996. 3.
- _____, “크레디트카드의 도난·보증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창간호), 1989. 1.
- _____, “크레디트카드의 의의와 특성”, 『계간 신용카드』(제13호), 1996. 12.
- _____, “크레디트카드의 도난·보증책임”, 대한변호사협회, 1986. 4.
3. 김성재, “보험판매 성공여부는 비효율성 및 소비자의 선호도에 달려 있다”, 신용경제, 1997. 5.
4. 김성천, “신용카드거래상 소비자문제와 그 해소방안”, 『계간 신용카드』(제13호), 1996. 6.
5. 김영기, “금융분쟁조정제도와 신용카드 관련 금융분쟁”, 『계간 신용카드』(제12호), 1996. 9.
6. 김영성,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법적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1988.
7. 김은철,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시 손실부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1994.
8. 명호근,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법률문제 소고”, 석사학위논문, 국민대대학원, 1983.
9. 박병일, “신용카드에 관한 법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 1993.
10. 배준호, “카드이용 증가의 요인과 거래안전의 확보”, 『계간 신용카드』(제12호), 1996. 9.
11. 송명선,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법적 연구 : 회원보호의 관점에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대학원, 1991.
12. 송정미, “방카슈랑스, 은행·보험 공존공생의 길 열린다”, 『신용경제』, 1997. 5.
13. 신용경제편집부, “우리나라의 카드산업의 현주소”, 『신용경제』, 1987. 11.

14. 육소영,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법률문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3.
15. 이명식, “향후 신용카드산업의 발전과제”, 「계간 신용카드」(제10호), 1996. 3.
16. 이부훈, “신용카드 법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 대학원, 1995.
17. 이영주, “분실카드 보상처리 문제사례 검토”, 「계간 신용카드」(제12호), 1996. 9.
18. 이요섭, “선진신용사회창조와 카드업계의 나아갈 길”, 「계간 신용카드」(제10호), 1996. 3.
 _____, “신용카드 지출이 통화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계간 신용카드」(제17호), 1997. 12.
19. 이은영, “서독의 보통거래약관법”, 「법조」(27권 3호), 1978. 3.
 _____, “신용카드(Credit Card)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 제23권 제1호」서울대 대학원, 1982.
20. 정동운, “신용카드의 도난과 분실”, 「상사법연구」(제6집), 한국상사법학회, 1988.
 _____, “신용카드 거래약관의 연구”, 「사법행정」(통권 311호), 1986.
 _____, “신용카드의 무단사용시 손실부담자”, 「사법행정」, 1984. 11.
21. 조용호, “크레디트카드의 법률문제”, 「사법논집」(17권), 1986. 12.
22. 조정욱, “신용카드에 관한 민사적, 형사적 쟁점의 고찰 : 주제와 판례중심으로” 법춘 법조인단 세미나자료(연수원 27기), 1997. 2. 22.(토).
23. 최기원, “신용카드 도난·분실에 의한 책임”, 법률신문 1987. 3. 9.

II. 外國文獻

【미국】

1. Arthur G. Shapiro, “Credit Cards : Instant Purchasing Power”, 18 Intramural Law Review of New York Univ., 1963.
2. Aubrey L. Diamond, “Commercial and Consumer Credit: An Introduction”, Butterworths Co., 1982.

3. Brian W. Harvey,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Trading"* , 2d ed., Butterworths Co., p.249.
4. Clark & Sguillante, *"The Law of Bank Deposits, Collections and Credit Cards"* , Revised Edition New York, Warren, Gorham and Lamont Co., 1981.
5. Cleveland, *"Bank Credit Cards : Issuers, Merchants and Users"* , 90 Banking Law Rev., 1973.
6. Comment, *"The Applicability o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to Modern Bank Card Systems"* , 18 Kentucky Law Rev., 1970.
7. Comment, *"The Tripartite Credit Card Transaction : A Legal Infant"* , 48 California Law Rev., 1962.
8. Comment, *"Unauthorized Use of Credit Cards and some related Questions ; What Problems Remain?"* , Kentucky Law Rev., 1973.
9. Gordon Borrie and Aubrey L. Diamond, *"The consumer, Society and The Law"* , 4th ed., Penguin Books Co., 1984.
10. Jerry G. South, *"Credit Card : A Primer"* , 23 Business Lawyer, 1968.
11. John C. Weistart, *"Consumer Protection in the credit card Industry Federal Controls"* , Vol. 70, Michigan Law Rev., 1972.
12. Jordan & Warren, *"The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 68 Columbia Law Rev., 1968.
13. Low & Woodroffe, *"Consumer Law and Practice"* , Sweet & Maxwell, 1985.
14. Mishkin F. S. ,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 4th ed., Columbia Univ.,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5.
15. R. W. Goode, *"Consumer Credit"* , United Kingdom Comparative Law Series, Vol. 3, 1978.
 _____, *"The Legal Regulation of Lending"* , in edited Aubrey L. Diamond, *Installment Credit*, 1970.
16. Tony Drury & Charles W Ferrier, *"Credit Card"* , Butterworths Co., 1984.
17. William B. Davenport, *"Bank Credit Cards and the Uniform*

- Commercial Code*”, 85 *Banking Law Rev.*, 1968.
- , “*Bank Credit Cards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Valparaiso University Law Rev. 1, no. 218, 1967.

【독일】

1. Canaris, “*Bankvertragsrecht*”, 2 Aufl., Rdn., 1981.
2. Hermann Blei, *Strafrecht II, “Besonderer Teil”*, 11 Aufl. München, C. H. Beck, 1978.
3. Peter Beck, “*Einwendungen bei eurocheque und Kreditkarte*”, 38 Bd (Koln ; Druck Verlagshaus Wieland), 1986.

【일본】

1. 加藤良三, “クレジット・カード”, 1977.
2. 吉原省三, “クレジット・カード取引の現況と法律關係”, 「ジュリスト」(428號), 1969. 7. 15.
3. 木村晋介, “クレジット・トラフル, 現實の課題 : クレジット・カードを中心として”, 「法律すのひろは」(37卷 3號), 1984. 3(昭和59年).
4. 三枝 守, “クレジット・カード犯罪の實態と對策”, 「法律すのひろは」(37卷 3號), 1984. 3(昭和59年).
5. 小谷文夫, “クレジット・カードをめぐる犯罪”, 「法律すのひろは」(37卷 3號), 1984. 3(昭和59年).
6. 植木 哲, “消費者信用法の基本問題”, 「現代契約法大系」(第5卷), 有斐閣, 1985.
7. 植田 蒼, “クレジット・カードの知識”, 日本經濟新聞社, 1990.
8. 新原草郎, “クレジット・カード取引と抗辯の接續”, 「判例リス」, クレジット取引法, 1986.
9. 原田國男, “コンピュータ, クレジット・カード等を利用した犯罪”, 「現代刑罰法大系」(第2卷).
10. 伊藤 進, “カード社會の今後の法的問題”, 「法律すのひろは」(37卷 3號), 1984. 3(昭和59年).

11. 長尾治助, “クレジット・カード法試論”, 「立命館大學人文科學研究紀要」(第61號), 1994. 3.
_____, “消費者信用法の形成と課題”, 「商事法務研究會」, 1984.
12. 芝原邦爾, “クレジット・カードの不正使用と詐欺罪”, 「法學セミナー」(第334號), 1982. 12.
13. 清水 巖, “クレジット・カード取引の法構造”, 「法律時報」(46卷 6號), 1973. 3.
14. 下村康正, “カード犯罪の刑法上の問題點”, 「法律すのひろは」(37卷 3號), 1984. 3(昭和59年).
15. 香川達夫, “クレジット・カードの法律上の性格”, 「法律すのひろは」(37卷 3號), 1984. 3(昭和59年).
16. 加藤一郎・竹内昭夫編, “消費者保護法講座5” 收録, 1985.
17. 澤野直紀, “クレジット・カードのアメリカ法の發展(上)(下)”, 「金融法務事情」(1014號).

